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55호)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9호)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80호)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97호)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48호)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2호)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94호)
- 김 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96호)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81호)

2026. 3.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1.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55호)	1
2.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9호)	2
3.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80호)	2
4.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97호)	3
5.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48호)	3
6.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2호)	4
7.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94호)	5
8. 김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96호)	5
9.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81호)	6
III . 주요내용	7
1.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55호)	7
2.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9호)	8
3.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80호)	10

4.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97호)	11
5.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48호)	13
6.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2호)	14
7.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94호)	16
8.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96호)	17
9.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81호)	18

IV. 참고사항 20

1.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48호)	20
-------------------------------------	----

V. 검토의견 21

1. 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21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26
3. 총칙 (안 제1장)	32
가. 목적 (안 제1조)	32
나. 정의 (안 제2조)	34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	42
라. 전략적 투자 및 상업적 합리성 원칙(정일영의원안 제3조의2 및 정태호의원안 제4조)	50

4.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안 제2장)	54
가.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등 설치 및 기능(안 제4조·제6조 및 제9조)	54
나. 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결격사유 (안 제5조·제7조 등)	75
다. 사업관리단(안 제8조)	84
라.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 등(정일영의원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	90
5.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장 및 제4장) ..	92
가. 자금 조달 및 투자 체계 총괄 검토	92
1)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 상 기금으로 관리할 필요성 ·	94
2)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필요성	105
3) 미국 투자 SPV 출자 방식	113
나. 한미전략투자공사	115
1) 설립 등(안 제11조부터 제27조, 제29조)	115
2) 자산위탁의 계약(안 제28조)	128
3) 회계 등(안 제30조부터 제32조)	134
4) 분쟁조정(정태호의원안 제34조)	140
다. 한미전략투자기금	142

라. 업무의 위탁(김건의의원안 제8조부터 제11조)	152
6. 보칙(안 제5장)	154
가. 자료 비공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및 제42조 등)	154
나. 국회 보고 및 동의 등(안 제40조 등)	160
다. 회의록 작성 등(홍기원의의원안 제43조·안도걸의원안 제10조·박수영 의원안 제8조)	168
7. 벌칙 및 과태료(안 제6장)	170
8. 부칙	174
[참고]	178

I. 제안경위

연번	구분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1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55호)	김병기의원 등 20인	2025.11.26.	2025.11.27.
2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59호)	홍기원의원 등 20인	2025. 12. 5.	2025. 12. 8.
3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180호)	진성준의원 등 12인	2025. 12. 11.	2025. 12. 12.
4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97호)	박성훈의원 등 13인	2025. 12. 22.	2025. 12. 23.
5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48호)	안도걸의원 등 10인	2025. 12. 23.	2025. 12. 24.
6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352호)	정일영의원 등 10인	2026. 1. 27.	2026. 1. 28.
7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594호)	박수영의원 등 13인	2026. 2. 5.	2026. 2. 6.
8	김건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596호)	김건의의원 등 11인	2026. 2. 5.	2026. 2. 6.
9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81호)	정태호의원 등 21인	2026. 2. 9.	2026. 2. 10.

II. 제안이유

1.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55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

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9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하며, 대규모 투자집행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80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에 서명했음. 이에 따라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의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미국의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 우리나라

가 전략적 투자를 할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정기보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4.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97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5.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48호)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조선·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음.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기간·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

· 재정 · 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 · 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제정법안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전략적 투자의 설계 · 집행 · 검증 전 과정에 대해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정 · 경제정책의 장기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균형 있게 보장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6.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2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 · 조선 · 핵심광물 · 에너지 · 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와 같은 전략적 투자는 그 규모와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단순한 투자 집행 근거를 넘어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 · 집행주체 · 재원구조 · 성과관리 및 국회 통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률체계가 필요함.

이에, 동 제정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담 기관 및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투자 회수 · 종료 절차,

국회 보고 및 감독 장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가 국익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7.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94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8.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96호)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투자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법정

분쟁이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함. 또한 투자 사업 추진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함.

아울러 재정경제부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81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함)를 체결하여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양해각서는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됨.

이러한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 설치,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원칙 확립, 미국 정부와의 협의 구조 제도화, 국회에 대한 보고·통제 장치 마련 등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투자 전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 필요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책임·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략적투자가 양국 산업협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1.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55호)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

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2. 흥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9호)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마. 국회 감독(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미국의 관세·비관세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재

정경제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며, 전략적투자가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80호)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 (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 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 (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 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마. 운영위원회는 전략적 투자와 관련하여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사는 전년도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40조).

4.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97호)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

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국회의 사전동의(안 제9조의2)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 및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5.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48호)

가. 전략적투자를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함)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공

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37조까지).

라.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6.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2호)

가. 전략적 투자의 개념 및 범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의2까지)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전략적 산업 분야 및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투자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의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

나.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 (안 제4조부터 제10조의2까지)

전략적 투자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사

업관리위원회 및 한미 협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 기획·선정·집행·협회의 단계별 역할을 구분함.

운영위원회는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미 투자 집행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외환시장 및 재정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고, 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함.

또한 전략적 투자 사업별로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완료 또는 주요 이행 단계 도달 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일정 요건 하에 투자금 회수 및 사업 종료 절차를 규정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전략적 투자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법적 지위, 조직, 임원, 업무 범위 및 내부 통제·감독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및 재원·운용 체계 (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 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운용 방식 및 회계 체계를 규정함.

마. 국회 보고 및 감독을 통한 책임성 강화 (안 제40조 및 제40조의 2)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매 회계연도 2회 이상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 대상 선정, 투자금액, 평가 기준, 외환·재정 영향 및 주요 협의 경과 등을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투자 전 과정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7.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94호)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

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2조부터 제33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채원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8. 김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96호)

가. 전략적 산업 분야의 의미 등(안 제2조)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정의함.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 및 제5조)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 및 운영함.

다. 국회의 사전동의(안 제7조)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보고 및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도 제출해야 함.

라.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적투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9.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81호)

가. 전략적투자의 정의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함)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천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함)를 전략적투자로 정의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운영(안 제13조부터 제38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마. 자료관리·감독·국회 보고 등(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국가안보·경제영향이 큰 자료에 대한 비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전략적투자·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 규정을 명시함

바.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마련(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비밀누설·자료유출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어 법적 통제 장치를 강화함.

IV. 참고사항

1.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48호)

이 법률안은 안도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V. 검토의견

1. 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한미 관세협상은 2025년 4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시작되었음. 이에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타격을 우려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고, 2025년 7월에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불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하였음.

다만, 구체적인 투자방법 및 수익배분 등에 이견이 있어 7월 이후에도 한미 간 협상이 계속되었고, 10월 말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관세율 15% 유지, 자동차 관세율 조정(25%→15%), 일부 전략 품목의 최혜국(Most-Favored Nation, MFN)¹⁾·무관세 적용 등 세부내용을 최종 타결하였음.

관세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²⁾ 형태로 발표되었고,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양국 간 MOU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³⁾가 체결되었음.

관세 조정의 주요 내용은 2025년 8월 7일부터 기존 MFN 또는 한미

1) 한 나라에 준 무역·투자상 혜택을 다른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원칙

2) 영문 명칭은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임

3) 영문 명칭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임

FTA 관세율을 유지한 채 추가로 부과되는 상호관세 수준을 15%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 수준으로 조정하고, 의약품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대해서는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하는 것임. 대미투자는 정부가 2,000억불을 투자하고, 우리나라 기업 주도로 1,500억불 조선협력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명시된 대미투자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2,000억불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위원장: 미 상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위원회는 협의위원회(위원장: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장관)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투자분야는 양국 경제·국가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이며, 투자약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선정되어야 함⁴⁾. 투자약정은 연간 200억불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에 따른 자금요청 방식(capital call)⁵⁾으로 납입됨. 단,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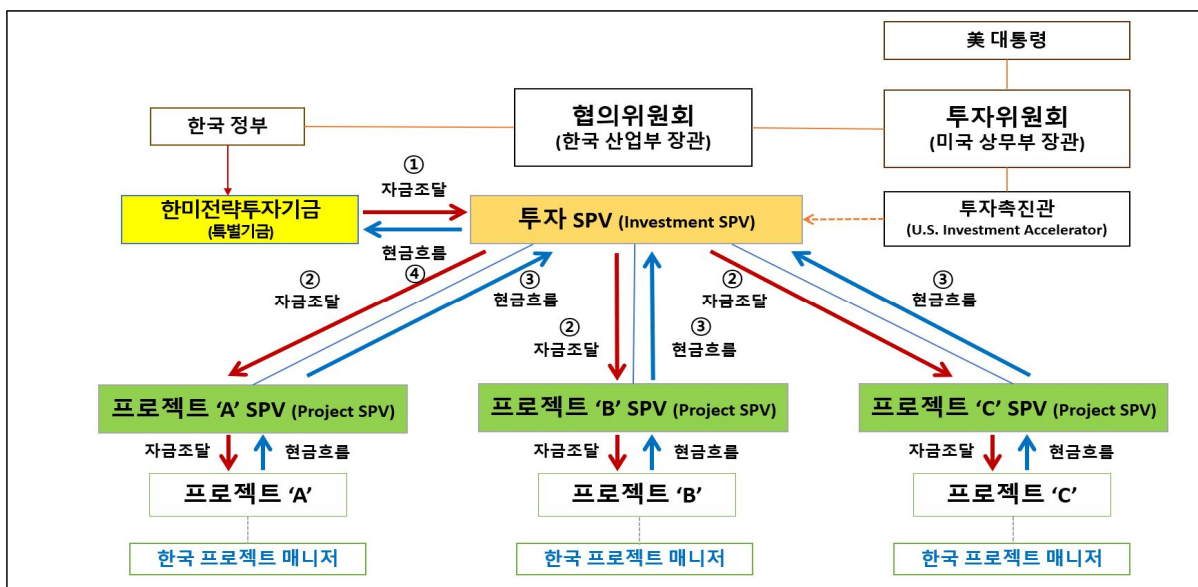
4) 일본의 경우 JBIC(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과 기능 유사)에 ‘일본전략투자기구’를 신설하여 2025년 10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인 2029년 3월까지 3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

5) 캐피탈 콜(capital call)은 투자를 할 때 목표한 투자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서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금 납입시기와 규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미국은 모든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 목적 법인)를 설립하고,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함.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분배금(현금흐름⁶⁾)은 간주배분액⁷⁾에 해당하는 금액이 충족될 때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간주배분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대9로 분배됨.⁸⁾

[2,000억불 투자의 자금조달 및 현금흐름 구조도]



자료: 재정경제부

-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적인 자본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방식임
- 6) 실제로 발생한 현금으로, 현금흐름에서 투자원금과 비용을 제하면 투자의 순수익이 됨.
- 7) 간주배분액은 투자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최대 20년)에 걸쳐 균등하게 회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회계상 기준 금액으로, 실제 원리금 회수 여부와는 구별됨.
- 8) 예컨대, 향후 20년간 투자원금(2,000억 달러)과 이자를 합산한 우리나라의 총 회수 목표액, 즉 간주배분액을 3,000억 달러로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3,0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5:5로 현금흐름을 배분하게 되므로, 총 6,000억 달러의 현금흐름이 필요함. 우리나라가 20년 내 3,000억 달러를 회수하면 이후의 현금흐름은 1:9로 분배됨. 만약, 20년 내 간주배분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할 경우 상호 협의를 하게 됨.

일정기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을 협의할 수 있고, 원금은 투자존속기간과 20년 중 적은 기간으로 균분하여 상환하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를 합한 값임.⁹⁾ 미국은 프로젝트 벤더 선정 시 우리나라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경우 우리나라가 추천한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함.

1,500억불 조선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민간투자·보증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동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0억불 투자와 달리 전부 기업에 귀속됨.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제정안은 2,000억불 대미투자과 1,500억불 조선협력투자 등 총 3,500억불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려는 취지임.

그리고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는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의원안)이 11월 중 발의되어 11월 1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가 인하되었음.

9)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는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해 산정함

아래에서는 제정안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 및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를 진행함.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9개의 제정안은 제정안별 조항 구성은 일부 상이하나, 총괄적으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의 입법목적, 전략적투자 등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2장은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로서,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와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3장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제5장은 보칙을 규정하고, 제6장은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¹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공통 내용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전략적투자 등 주요 개념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 공사의 설립, 업무 등 - 자산위탁의 계약, 업무의 위탁(산은, 수은, 무보, KIC 등) - 회계, 예결산 등
제4장 한미투자전략기금	- 공사 내 한미투자전략기금 설치 - 기금의 재원(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등)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10) 다만, 김건의원안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4개의 장(총칙, 투자사업의 심의 및 국회 동의, 업무의 위탁,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제5장 보칙	- 자료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원칙 * 박수영의원안은 자료의 공개 원칙 - 국회 보고, 면책 등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과태료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첫째,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하여, 각 법안은 대미투자 전 국회의 사전동의, 국회 보고, 회의록 상임위 제출 및 비공개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 등 다양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법안별 국회통제 주요 내용]

구 분	대미투자 사전동의	국회 보고	기타
김병기의원안		- 연 1회 이상	
홍기원의원안		-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시(상임위) - 대규모 투자 집행 전 (상임위)	- 중대한 사정변경 시 상임위의 대미투자 중단 요구 가능 - 해외투자영향평가서, 회의록 상임위 제출
진성준의원안	-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동의	- 정기국회 전(상임위)	- 비공개 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요구 시)
박성훈의원안	-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동의	- 연 1회 이상	

구 분	대미투자 사전동의	국회 보고	기타
안도결의원안	- 대규모 투자, 분배 비율 조정 등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 동의	- 일정 규모(10억 달러 등) 이상 투자 시 사전 보고(상임위) - 대미투자 협의 결과, 예결산 보고(상임위) - 정기국회 전 대미투자 관련 보고서 제출	- 의사결정기구(운영위, 사업관리위)에 상임위 추천 전문가 포함 - 회의록 상임위 제출 - 비공개 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비공개를 전제로 요구시) - 공사 사장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정일영의원안		- 연 2회 이상(상임위)	
박수영의원안	- 대미투자 추진 전 소관 상임위 동의	- 연 1회 이상 - 경제영향평가, 보완대책 보고	- 회의록 상임위 제출 - 공사 사장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김건의의원안	-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동의(영향평가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제출)	- 연 1회 이상	
정태호의원안		- 연 1회(전략적 투자, 기금 운용) -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기금)	- 공사 이사에 국회 추천 1인 포함

대미투자가 국가경제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투자계획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회 통제 장치 마련의 타당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MOU에 존재하지 않는 국내 의무 부과로 인하여 통상마찰이 발생할 위험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통제의 적정 수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둘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신규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김건의의원

안은 공사의 설립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다른 8개 법안은 모두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를 신규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신규 조직 설립에 따른 행정비용, 한시 운영(최대 20년)에 따른 고용 및 법적 책임 승계¹¹⁾, 대미투자에 기존 정책금융기관(JBIC¹²⁾)을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다만, 대미 직접투자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설립 목적과 차이가 있고, 대규모 투자 업무로 인하여 본연의 정책금융 기능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셋째,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김건의원안을 제외한 8개 법안은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에서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가 투자대상을 최종 선정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두고 있음. 이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검토와 재정적 판단을 분리함으로써 신중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11)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소송의 당사자인 상황에서 조직이 해산하는 경우 그 책임을 승계할 주체가 모호해지는 문제 등

12)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다만,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는 심의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나, 투자 결정에 대한 사후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바, 전략적 투자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넷째,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운용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음.

김건의원안을 제외한 8개 법안의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정부가 한미전략투자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에 출자·출연한 재원을 각 기관이 다시 기금에 재출연하는 구조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등 정부가 기금에 직접 출연하였으면 받아야 할 「국가재정법」상 통제를 받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³⁾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할 경우 공사의 신설 필요성, 국회의 통제 절차가 국회의 예결산 심의·확정으로 대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법」 취

13)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지에 부합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대미투자 집행의 탄력성과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사 내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총칙 (안 제1장)

가. 목적 (안 제1조)

김병기·홍기원· 진성준·박성훈· 정일영·박수영 의원안	안도결의원안	김건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목적 -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u>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u> <u>서의 협력을 강화</u>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목적 -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u>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u> <u>서의 협력을 강화</u>함과 동시에 <u>민주적 절차를 통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함</u>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목적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u>전략적 산업 분야에</u> <u>서의 투자협력을</u> <u>효율적으로 관리</u>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목적 -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u>이행</u>을 위하여 <u>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에</u> <u>필요한 투자계획의 수립·집행 및 관리에</u> <u>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u>으로써 <u>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u>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제정안 제1조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목

적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도결의원안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전략적 투자 추진’을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정태호의원안은 ‘투자계획의 수립·집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음.

안도결의원안의 목적 규정은 단순한 투자 활성화를 넘어 전략적투자 과정에 대한 민주적·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승인 등 국회 통제 절차의 법제화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의 입법 여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태호의원안의 목적 규정은 동 법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체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동 법이 전략적투자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목적 규정에 구체화함으로써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나. 정의 (안 제2조)

김병기·홍기원·박성훈·진성준·정일영의원안	안도결의원안	박수영의원안	김건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정의 - 전략적 산업 분야 조성, 반도체 등(대통령령 위임) - 전략적투자: <u>대미투자, 조선협력투자</u> - 한미협의회 - 미국 투자위원회 - 상업적 합리성: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 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	○ 정의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상업적 합리성: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 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상환 및 <u>경제적 이득을</u> 목적으로 하는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	○ 정의 - 전략적 산업 분야 조성, 반도체 등(대통령령 위임 x)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정의 - 전략적 산업 분야 조성, 반도체 등(대통령령 위임) - 전략적투자: <u>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u>	○ 정의 - 전략적 산업 분야 조성, 반도체 등(대통령령 위임) - 전략적투자: <u>대미투자, 조선협력투자</u> - 한미협의회 - 미국 투자위원회 - 상업적 합리성: <u>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u>

김병기·홍기원· 박성훈·진성준· 정일영의원안	안도결의원안	박수영의원안	김건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자산위탁: 한국은행, 기금이 자산의 운용을 공사에 맡기고, 수수료 지급하는 것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되는 투자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박수영의원안을 제외한 8개 법안은 제2조제1호에서 “전략적 산업 분야”를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음.

박수영의원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투자 분야가 국회의 심사 없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경계한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투자 분야를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안에 따르면 MOU상 가능한 투자 분야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투자 분야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경계한 법안의 취지를 견지하면서도 MOU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통해 투자 분야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되, 분야의 신설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김건의원안을 제외한 8개 법안은 제2조제2호에서 “전략적투자”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한다)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동 정의 규정은 제정안에서 규율하는 투자의 범위가 정부가 투자하

기로 약정한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또한, 김건의원안을 제외한 8개 법안은 같은 조 제5호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하고 있음¹⁴⁾.

“상업적 합리성”은 우리나라의 사업별 대미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동 개념은 대미투자 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 원금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이며, 손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우리나라가 출자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14) 다만, 정태호의원안은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상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

부록 A

정의

본 양해각서(“양해각서”)의 목적상: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투자”의 존속 기간 동안 간주배분액 정의의 (A)호 및 (C)호에 규정된 분배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어느 “투자”에 대한 **간주배분액**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A) 다음의 곱:

(i) 해당 “투자”에 대한 한국의 자금 조달일 기준 간주이자율 및

(ii) 해당 “투자”금액에서 아래 (B)호에 따른 해당 “투자”에 대한 이전 분배액을 차감한 금액(단, 어떠한 경우에도 0보다 적을 수 없음)에 이자 이월 금액을 더한 금액;

(B) 해당 “투자”금액을 (x) 한국과 협의하여 미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 해당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예상 존속 기간(년 단위로 표시)과 (y) 20 중 작은 수치로 나눈 값; 및

(C) 여하한 이월 금액.

어느 “투자”에 대한 **간주이자율**이란, 기준 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자 이월 금액이란, 특정 기간에 대해, 분배금 지급 시점에 해당 “투자”의 분배 가능 현금 흐름이 간주배분액 정의의 (A)호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의미한다.

자료: 한-미 전략적 투자 MOU 발췌

한편, 안도결의원안은 상업적 합리성을 원리금 상환 외에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정태호의원안은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시장 환경에서 합리적인 민간 투자자가 수용할 만한 수익성, 외부 전문기관 검증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⁵⁾ 이는 대미투자의 규모와 그로 인한 국민경제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엄격한 기준을 통해 투자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하려는 취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한미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통해 합의한 투자 선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상회하는 요건으로 작동할 경우, 국내법상 기준과 MOU상 기준 간 해석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특정 투자안의 적합 여부를 둘러싸고 양국 간 인식 차이나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구체화함에 있어 MOU와의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할

15) 정태호의원안 제2조제5호

“상업적 합리성”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 가. 정상적인 시장 환경에서 합리적 민간 투자자가 수용할 만한 수익성
- 나. 투자 존속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에 충분한 예상 현금흐름 및 민감도 분석
- 다. 시장가격·위험수준·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외부 전문기관 검증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군별 비교지표 및 위험 평가 기준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제정안 제2조제6호는 “자산위탁”을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자산위탁”의 정의를 원용한 것으로서 동 법에서도 자산위탁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며¹⁶⁾, 한국투자공사는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¹⁷⁾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음.

다만, 자산의 위탁은 정부 기금 중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나, 제정안은 사실상 모든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국가재정 외로 별도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면, 해당 기금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을 “외국환평형기금”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¹⁸⁾

16) 「한국투자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7)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

18) 만약, 한미전략투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된다면, 자산의 위탁이 가능한 기금을 외국환평형기금으로 한정하여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수익 위주로 대미투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제정안과 같이 “자산위탁”이 정의되는 경우 외국환평형기금 외의 기금에서도 자산을 위탁하여 대미투자를 위한 재원의 부담 주체가 추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한국투자공사법」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뿐임.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는 동 조항에 명시된 일부 회계·기금을 제외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임.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안도걸·정일영·박수영 의원안	김건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u>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u> -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이 법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 동)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u>전략적투자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u> -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u>다만, 내부통제·회계·감독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준용</u> - (좌 동) -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이 법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안도걸·정일영·박수영 의원안	김건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외평기금은 「외국환 거래법」에도 불구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 가능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 가능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u>다만, 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u> - (좌 동) - (좌 동)

안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태호의원안은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투자에 대한 독자적이고 일관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전략적투자는 외환, 재정, 공공기관 운영 등 다수의 법률과 중첩되는 영역인바, 특정 조항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 전반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경우, 개별 사안에서 기존 법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같은 조 제3항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해 「한국은행법」, 「은행법」¹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²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²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공사의 성격이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법인이기 때문임. 공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영업을 하는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등 금융업 관련 법률의 건전성·영업 규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달성을 저해할 수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 관련 법률

19) 「은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

다만, 정태호의원안은 금융 관계 법령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내부통제·회계·감독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타 법의 준용 여부를 하위 법령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법 체계상 일반적인 사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내부통제·회계·감독에 대한 준용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금융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례]

법률	조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성격 등)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3조·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출자를 받은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출자로 자금지원을 받은 법인 등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한국산업은행법」에서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²²⁾

다만, 제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출자 법인 등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같은 조 제5항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이 법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

22) 「한국산업은행법」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출자하여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등²³⁾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신속한 처분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임.

「한국산업은행법」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로 보유하게 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⁴⁾

다만, 정태호의원안은 공사의 계약 체결에 대하여 공공계약 관련 법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24) 「한국산업은행법」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령의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따라서 대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정태호의원안과 같이 최소한의 절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공계약 관련 법령의 적용 배제가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같은 조 제6항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출자 등이 외환 관련 업무임을 고려하여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임.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출자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신고서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도록 외국환업무 등록(「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자본거래 신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해외직접투자 등의 신고수리(「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를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⁵⁾

한국투자공사도 외환을 운용하여 출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5)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데, 「한국투자공사법」에서도 동일하게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신고 등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⁶⁾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외국환평형기금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대미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산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외화 투자 재원을 단기간 내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외국환평형기금의 본래 목적과 국가 경제 위기 시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준비자산으로서 한국은행 외화 자산의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 외화자산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바, 이를 위해 국회 사전 보고 등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6)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삭제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라. 전략적 투자 및 상업적 합리성 원칙(정일영의원안 제3조의2 및 정태호의원안 제4조)

정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전략적투자의 기본원칙 - 전략적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 - 전략적투자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투자에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	○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 - 전략적투자, 기금의 운용 및 이에 부수하는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은 상업적 합리성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함 - 운영위원회는 투자·출자·대출·보증 등 전략적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상업적 합리성을 평가 -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적투자 사업으로 선정하거나 지원 불가 - 재경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면 운영위에 투자·지원 집행의 중지·보완·재검토를 요구 가능 -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상업적 합리성 요건의 일부를 조정 가능

정일영의원안 제3조의2는 전략적투자의 기본원칙으로 ① 전략적투자가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될 것과 ② 전략적투자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투자에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①과 관련하여, 대규모 국내재원이 대미투자로 활용됨을 고려하면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필요성은 당연히 긍정됨. 다만, MOU는 전략적투자의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전략적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보다는 지향해야 할 목표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한편, ②와 관련하여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와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 시 가능한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²⁷⁾, 정일영의원안은 국내 기업의 ‘공동투자자 참여 구조’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MOU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이해되며, 전략적 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를 확대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해됨.

정태호의원안은 제4조에서 상업적 합리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27) 한국의 벤더(Vendor), 공급업체 및 프로젝트 관리자

11. “투자” 특수목적법인(이하 “SPV”), 프로젝트 SPV, “투자” 및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미국은 가능하고 가용한 경우, 유사한 외국 벤더 및 공급업체 대신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한국은 그러한 벤더 및 공급업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미국은 그러한 추천을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하에 검토한다.

12. 미국은 가능하고 가용한 경우, 각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프로젝트에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 또는 지원 집행의 중지·보완·재검토를 운영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적 합리성 요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태호의원안은 상업적 합리성에 대하여 정상적인 시장 환경에서 합리적인 민간 투자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 및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검증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양해각서(MOU)상 기준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국내법적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 이러한 상업적 합리성 개념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음.

동 법안에 따르면, 재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면 운영위원회에 투자 등의 집행의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행 중지 요구권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고적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자체로 MOU상의 이행 의무를 즉각적으로 위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한미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통해 합의한 투자 선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상회하는 요건으로 작동할 경우, 국내법상 기준과 MOU상 기준 간 해석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

성 요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MOU상 상업적 합리성 요건이 우리나라 투자금의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상업적 합리성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안 제2장)

가.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등 설치 및 기능(안 제4조·제6조 및 제9조)

김병기·박성훈· 정일영·박수영· 정태호의원안	홍기원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건 의원안
○ 운영위 - 한미전략투자공사(김건의원안: 재경부)에 설치 - 심의 의결 사항: 전략적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에 관한 사항 등 * 김건의원안: 공사 등에 관한 사항 제외 -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사업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투자를 집행 금지 * 정태호의원안: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에 원칙적으로 투자 금지 -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경부장관(+산업부장관: 정태호의원안)에게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				
- 소규모 투자 등에는 사업관리위 검토 절차 중 일부 생략 가능(정태호의원안)	(홍기원의원안) -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또는 양해각서의 기본 전제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대미투자의 신규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 가능, 이 경우 산업부장관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양해각서의 개정 또는 이행중지 여부를 검토 - 국회 소관 상임위는 운영위에 대미투자의 신규집행 중단 또는 조정 조치를 요구 가능, 운영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운영위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을 요구 가능			
○ 사업관리위 - 산업부(안도걸의원안: 공사)에 설치 - 심의사항: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				

김병기·박성훈· 정일영·박수영· 정태호의원안	홍기원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건 의원안
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u> * <u>박수영의원안: 대통령령 위임 x</u> - 사업관리위는 산업부장관에게 미국과 협의(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하여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포함)를 요청 가능				
- 산업통상부 장관 준수사항: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 전략적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전략적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진성준의원안: ‘가급적’ 제외)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단체 또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				
* <u>정일영의원안:</u> <u>벤더 선정 시</u> <u>대한민국 국</u> <u>민이 수행하</u> <u>는 총부가가</u> <u>치가 전체 사</u> <u>업 대비 대통</u> <u>령령으로 정</u> <u>하는 비율 이</u> <u>상이 되도록</u> <u>노력</u> - <u>상업적 합리</u> <u>성 검토 등</u> <u>에 대해 공</u> <u>사 비용지원</u> <u>가능(정태호</u> <u>의원안)</u>		(진성준의원안) - <u>투자 목적과 핵심 성과지표 등</u> <u>을 미국과 협의, 전략적 투자 사</u> <u>업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u> <u>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과도한</u> <u>손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는</u> <u>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처분</u> <u>을 할 수 있도록 미국 투자위원</u> <u>회와 협의</u>		
○ 운영위와 사업관리위의 관계 - 사업관리위는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 -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을 선				

김병기·박성훈· 정일영·박수영· 정태호의원안	홍기원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건 의원안
정 - 사업관리위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 운영위는 추진의사를 심의·의결. 이 밖에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관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박수영의원안: 이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 대통령령 위임 x				
- 산업부장관은 추진 사업을 미국과 협의, 그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 (<u>박성훈 의원안은 해당 내용 삭제</u>)	- (좌 동)	- (좌 동)	- 산업부장관은 추진 사업을 미국과 협의, 그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하고 <u>결과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u>	
○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원장: 산업부장관 - 위원: 사업관리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미 상무부장관(<u>정태호의원안: 미 관계 행정기관의 장</u>)이 지명				
○ 투자금의 회수 및 처분(<u>정일영의원안</u>) - 운영위는 전략적투자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 한미 협의위원회의 합의로 명백해진 경우 등에는 투자금의 회수 및 처분 의결 가능 - 산업부장관은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한미 협의를 통해 미국 측과 투자금 회수 또는 지분 처분에 관해 협의 ○ 대미투자 목적·기준의 설정 및 조정(<u>정태호의원안</u>) - 산업부장관은 미국과의 협의를 대미투자 사업에 관하여 투자의 목적, 투자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야 함 - 투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산업부장관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 회수 등을 할 수 있음(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 필요) - 미국과의 협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잠정적인 투자계획 또는 조정조치를 결정 가능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가 미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 사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위원회는 추천 전에 한국과 직접 또는 한미협의회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또한, 협의회위원회는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⁸⁾

제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대한민국과 미국 간 협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협의에 앞서 필요한 우리나라 내부 의사결정 체계와 리스크 관리 및 이행 장치를 규율하려는 취지임.

[제정안 내 명시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조문]²⁹⁾

연번	주요 사항	조문
1	연간 200억불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함	제4조제2항
2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제4조제3항
3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제6조제3항제1호
4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하여야 함	제6조제3항제2호
5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여야 함	제6조제3항제3호
6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및 에너지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 노력 등)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함	제6조제3항제4호

28) 「한-미 전략적 투자 MOU」

5. “투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기 전에, 한국과 직접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한국과 미국이 지명한 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협의한다. 협의회위원회는 특히 각국의 관련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29) 2. 외환시장 불안과 관련한 협의는 MOU가 아닌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내용임.

연번	주요 사항	조문
7	20년의 기한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함	제6조제3항제5호

제정안 제2장은 전략적투자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기구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및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와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관계,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운동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한미전략투자공사(김건의원안의 경우 재정경제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운영위원회는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사업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투자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상 합의된 연도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를 준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그 아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한편, 김건의원안을 제외한 8개 법안은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과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조선협력투자 원활화 방안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관리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의(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하여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포함)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하여야 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미국과 협의하여야 함.

또한,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단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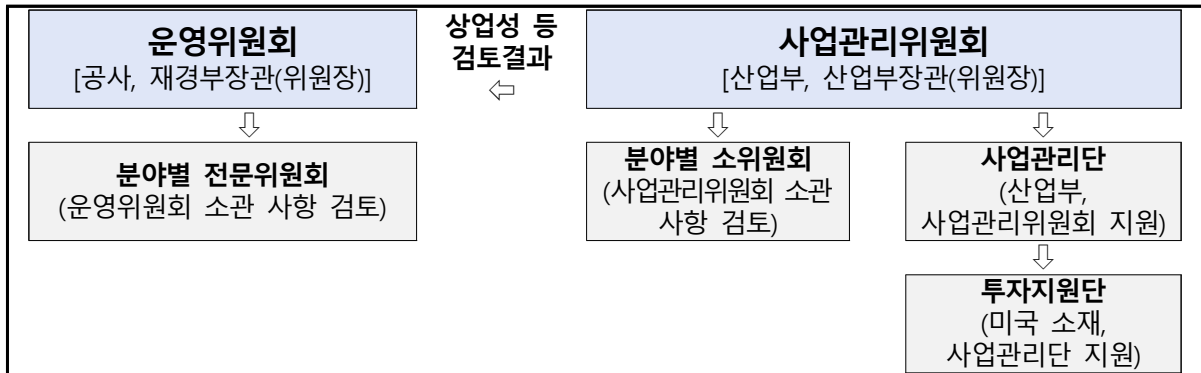
고, 대미투자 업무 지원을 위하여 미국에 소재한 투자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사업관리위원회 소속에 관하여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정일영·박수영·정태호의원안은 산업통상부, 안도걸의원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로 두고 있음.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간 비교]

구분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설치기관	한미전략투자공사	산업통상부 (안도걸의원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위원	재경부장관(위원장), 관계장관, 민간위원, 사장 등 15명 이내	산업부장관(위원장), 관계차관, 민간위원 등 20명 이내
기능	심의·의결	심의
심의의결 사항	1. 전략적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1.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2.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3. 조선협력투자 원활화 방안 검토 (이하 생략)
협의를요청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심의사항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국과 협의(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하여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포함)를 요청할 수 있음

[한미 전략적투자 거버넌스 체계]



이어서 제정안의 대미투자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운영위원회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으로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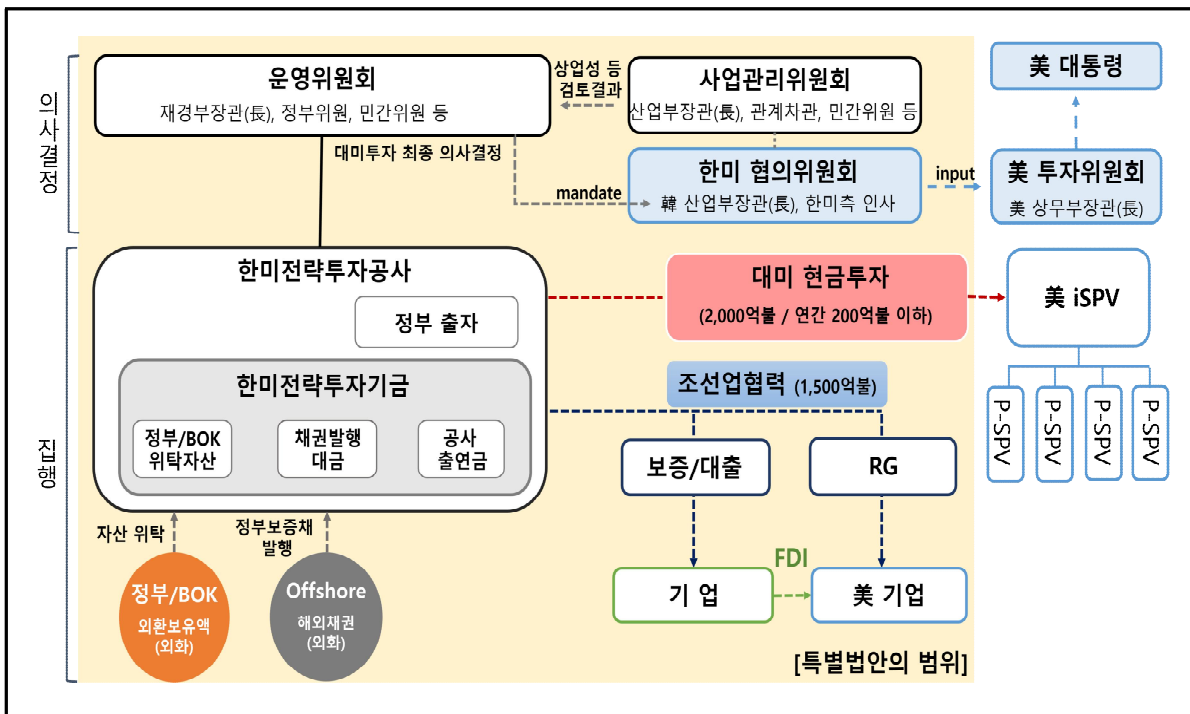
[한미전략투자 절차]

- ①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 및 법·전략적 고려 검토 →
- ②운영위원회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투자 의사 결정 →
- ③운영위원회 의결 사업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미국과 협의 →
- ④사업추진 확정시 운영위원회가 투자 결정

자료: 재정경제부

즉, 대미투자 대상 사업의 제안과 제안받은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진의사를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는 구조임.

[한미 전략투자 흐름도]



자료: 재정경제부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김건의원안을 제외한 8개 법안은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위한 사업관리위원회와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있음.

전략적 투자의 결정에 있어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주된 기능을 비교하면,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함.

이처럼 기금 수요사업의 발굴과 투자결정을 분리하여 중층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내부 견제와 균형을 모색하고 투자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먼저 검토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 예상되므로,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중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 의사결정의 사후적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원화된 추진체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의 가능성과, 중층적 검토를

통해 투자 판단의 신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실익을 심도 있게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사업관리위원회의 소관과 관련하여, 김건의원안은 사업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안도걸의원안은 공사에, 그 밖의 7개 법안은 산업통상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관리위원회를 산업통상부 산하에 두도록 한 취지는 산업통상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별 투자사업의 적합성을 점검하려는 취지로 보임.³⁰⁾

그러나 중앙부처(산업부)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공사)이 최종 의결하는 구조는 적합하지 않고, 투자기획(운영위)과 사업관리(사업관리위)의 연계 등 의사결정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공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있음.

따라서 이원화된 위원회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이를 모두 공사 아래 두거나, 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되 그 아래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셋째,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관리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산업통

30)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측과 협의 하에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 바,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미측 협의에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상부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의(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하여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포함)를 요청할 수 있는데, 추진체계상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사업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미국과 협의를 마친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사실상의 기속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중층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둔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넷째, 제정안은 미국과의 협의 주체를 안건별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의 주체는 미국의 정치적 환경, 상황별 협의 대상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협의 주체를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정부”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미국과의 협의 주체를 협의 안건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특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의 조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도

록 규정되어 있음. 대미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의 조정에 대한 협의 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명시한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외환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환율 불안으로 인한 대미투자 집행의 조정이 다른 안건과 함께 통합적으로 협의되는 경우, 단일화된 협상 창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협의에 나서게 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음. 특히, 미국 측에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야 교섭 과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증가함.

또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이행이 환율 불안을 야기할 경우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요청 주체를 ‘한국’으로 명시할 뿐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 당사자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³¹⁾ 한-미 전략적 투자 MOU도 미측 투자위원회와 협의 주체를 ‘한국’ 또는 ‘한미 협의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음.³²⁾

따라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협의주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

31)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외환시장 안정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32) 「한-미 전략적 투자 MOU」

5. “투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기 전에, 한국과 직접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한국과 미국이 지명한 자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협의한다. 협의위원회는 특히 각국의 관련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은 이상 법률에서 미측과의 협의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등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향후 우리나라가 협의과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정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도 통상협상의 주체를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부”로 명시하고 있음.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정부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따라 통상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³³⁾

다섯째, 한미 협의위원회의 미국 측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정태호 의원안은 미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그 밖의 법안은 미국 상무부장관으로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3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정부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따라 통상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 측이 지명할 인사들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으로 규율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우리 측 위원에 대해서만 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한다는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여섯째, 홍기원의원안 제4조제4항은 美 관세·수입규제,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상업적 합리성 또는 MOU 전제가 실질적으로 변경될 시, ①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신규 집행을 중단 또는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대미투자 신규 집행의 중단·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정일영의원안 제10조의2는 사업의 지속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훼손되어 과도한 손실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에는 운영위원회가 투자금 회수 및 처분 의결 등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우선 운영위원회의 대미투자 신규 집행 중단 및 조정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 사항’ 및 ‘양해각서 해석 및 이행 사항(개정 및 중지 필요성 포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미투자 신규 집행 중단 사유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다음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대미투자 신규 집행의 중단·조정 요구는 대미투자가 국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은 긍정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대미투자 집행 중단·조정 요청에 기속되도록 할 경우 MOU에 따른 우리 측의 분배금 수령 권리 상실³⁴⁾ 및 미국 측의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진성준의원안 제6조제3항³⁵⁾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대미협약의 준수 사항에 ①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투자 목적과 핵심 성과 지표 등에 대해, 그리고 ②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과도한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투자회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미국 투자위원회와의 협의를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미투자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동 규정은 투자 회수·처분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대상으로

34) 한-미 전략적투자 MOU 제9조

한국은 단독 재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을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한다. 미국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의 절차 이후에도 한국이 요청된 날짜까지 “투자”금액 전액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이하 “미조달 금액”), 한국은 간주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 수령 권리를 상실하고, 대신 수정배분액(Revis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을 수령하며, 제15항(A)호의 간주배분액에 대한 언급은 수정배분액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하 생략)

35) 진성준의원안 제6조(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미국 투자위원회로부터 제안받은 대미투자 사업 및 미국 투자위원회에 제안할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목적과 핵심 성과지표 등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전략적 투자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중대한 사정 변경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과도한 손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포함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MOU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상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대미투자 성과의 점검은 우리 측의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인바, 관련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일곱째,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른 법안들과 달리, 정태호의원안 제5조제2항은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하되, 국가안보, 공급망 안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는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에 정부 재량으로 과도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투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투자 손실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동규정의 실익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태호의원안이 MOU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³⁶⁾ 양국 간 상업적

36) 정태호의원안 제2조(정의)

5. “상업적 합리성”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가. 정상적인 시장 환경에서 합리적 민간 투자자가 수용할 만한 수익성

나. 투자 존속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에 충분한 예상 현금흐름 및 민감도 분석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이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여덟째, 정태호의원안 제7조제4항은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후보 사업의 검토, 예상 수입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업적 합리성이나 수익성 분석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외부 컨설팅, 회계법인 실사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정태호의원안은 산업통상부의 한정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기금 자산(공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사업관리위원회를 산업통상부 산하에 두고, 그 아래 사업관리단에서 동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공사가 비용을 지원토록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 업무는 공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하여 산업부는 미측이 제안하는 후보 프로젝트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³⁷⁾, 이를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

다. 시장가격·위험수준·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외부 전문기관 검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군별 비교지표 및 위험 평가 기준

37)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투자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프

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재정법」³⁸⁾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략적투자 사업 또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로젝트 전체 비용의 0.1~0.2% 수준임

3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홉째, 정태호의원안 제8조³⁹⁾는 대미투자의 목적·기준의 설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대미투자 사업에 필요한 조치, 투자 회수·조정 및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추진체계 측면에서 볼 때, 대미투자에 관한 우리 측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문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을 수행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결정의 주체를 운영위원회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동조 제5항은 미국과의 협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잠정적인 조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잠정적

39) 정태호의원안 제8조(대미투자 목적·기준의 설정 및 조정 등)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사업 및 대한민국이 미국 투자위원회에 제안할 대미투자 사업에 관하여 투자의 목적, 투자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 회수, 투자 규모의 조정, 추가 투자의 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한 투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경제안보·법률개정·정책변경 또는 시장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투자 목적의 달성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게 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손실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의 구체적 기준·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잠정적인 투자계획 또는 조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잠정조치에 대하여는 협의 완료 후 재검토 하여야 한다.

조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일방적 조치가 대미투자와 같이 외교·통상적 민감성이 높은 사안에서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결격사유
(안 제5조·제7조 등)

김병기·진성준 ·박성훈·정일영 ·박수영·정태호의원안	홍기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건의원안
○ 운영위 구성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위원장: 재경부장관 - 위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u>박수 영의원안</u> 금융 분야 10년 이상 종사), 공사 사장 -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u>박수영의 원안</u> 전략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 위 구성 가능 * <u>박수영의원안</u>: 운 영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 위임 x	○ 운영위 구성 - (좌 동) - (좌 동) - 위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공사 사장, <u>외교부장관</u>, <u>산업부장관</u> - (좌 동)	○ 운영위 구성 - (좌 동) - (좌 동) - 위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u>1/2 이하</u>),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민간분 야</u> 사람 등 위 원장이 위촉하 는 사람(<u>임기 2 년</u>), 공사 사장, <u>상임위 추천 전 문가 3명 이상 (임기 2년)</u> - (좌 동)	○ 운영위 구성 - (좌 동) - (좌 동) - 위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김병기·진성준 ·박성훈·정일영 ·박수영·정태호의원안	홍기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건의원안
○ 사업관리위 구성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 위원장: 산업부장관 - 위원: 관계 행정 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박수영의원안</u> 금융 분야 종사), 공사 임원 1인 -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u>박수영의원안</u> 전략투자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가능 * <u>박수영의원안</u> 사업관리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x	○ 사업관리위 구성 - (좌 동) - (좌 동) - 위원: 관계 행정 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공사 임원 1인, <u>재경부 차관</u>, <u>외교부 차관</u> - (좌 동)	○ 사업관리위 구성 - (좌 동) - (좌 동) - 위원: 관계 행정 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u>(1/2 이하)</u>, 학식이 풍부한 <u>민간분야</u> 사람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임기 2년</u>), 공사 임원 1인, <u>국회 상임위 추천 전문가 4명 이상(임기 2년)</u> - (좌 동)	
		○ 위원 결격 사유 - 대한민국 국민	

김병기·진성준 ·박성훈·정일영 ·박수영·정태호의원안	홍기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건의원안
		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 위원 신분보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 기 중에 그 의 사에 반하여 해 임되지 않음 - 해임사유: 위원 결격 사유, 신체 상·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 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 가능	

제정안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다만, 홍기원의원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부 장관을,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정경제부 차관 및 외교부 차관을 추가하고,

안도결의원안은 ① 각 위원회 정부위원 수를 전체 위원 1/2 이내로 제한하고, ②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③ 국회 추천 민간위원 몫(운영위원회 3인 이상, 사업관리위원회: 4인 이상)을 추가하고, ④ 위원 결격사유 및 신분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박수영의원안은 민간위원 요건에 금융 분야 종사 경력(운영위원회는 10년 이상)을 추가하되, 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고,

김건의의원안은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홍기원의의원안은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장·차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 투자가 단순한 자산운용을 넘어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 및 대미 통상 관계 안정화라는 고도의 외교적 행위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구조가 산업적 전문성(산업부)과 재정적 책임성(재경부)의 상호 견제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률에 명시하는 당연직 위원은 양 부처로 한정하고, 안전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도결의원안은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① 정부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② 국회 추천 민간위원 몫을 명시하고 있음.

① 민간위원 확대는 해외투자, 법률,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전략적투자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한국투자공사운영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경우 정부위원 비중이 낮은 편임.

② 국회 추천 민간위원 몫을 명시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가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국회 추천 민간위원은 전문성을 내재함과 동시에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급망안정화법」⁴⁰⁾에 따른 공급망기금운용심의회 및 「한국산업은행법」⁴¹⁾에 따른 첨단전략기금운용심의회 등 국회 추천 민간

40) 「공급망안정화법」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입법례가 있음.

[유사 위원회 정부위원 구성]

위원회	정부위원 / 전체위원 수
국민연금기금운용위	6 / 21
KIC운영위	2 / 9
예보 예보위	3 / 7
공급망기금운용심의회	0 / 7(국회추천 2 포함)
첨단전략기금운용심의회	0 / 7(국회추천 2 포함)

자료: 재정경제부

셋째, 안도결의원안은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위원 결격사유 및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⁴²⁾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⁴³⁾는 각각

-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 「한국투자공사법」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제14조에 따른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43) 「국민연금법」
-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다수 입법례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원 임기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규정은 위원회의 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국민연금법」 및 「예금자보호법」⁴⁴⁾ 등 다수 입법례가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법」과 같이 1차만 연임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박수영의원안은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요건에 금융 분야 종사 경력(운영위원회는 10년 이상)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전략적 투자의 대상이 조선, 에너지,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³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44) 「예금자보호법」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 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점을 고려할 때, 금융 분야 경력 요건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요건을 설정할 경우 산업·기술·법률 등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박수영의원안은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자의적인 구성·운영 등 지나친 재량의 발현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제도 운영의 경직성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섯째, 김건의의원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사업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재정경제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대미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대미투자는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통상환경, 공급망 및 안보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산업통상부와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사업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협력이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김건의원안은 운영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바, 재정경제부 중심의 단일 위원회 체계만으로 대미투자 업무에 요구되는 산업·기술·통상 등 복합적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다. 사업관리단(안 제8조)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정일영·박수영 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안도결의원안
○ 사업관리단 -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u>산업부에</u> 사업관리단을 설치 - 사업관리단은 대미투자 대상 사업 발굴, 대미투자 사업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국에 소재한 투자지원단을 설치 가능	○ 사업관리단 - (좌 동) - (좌 동) - <u>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위의 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업무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가능</u>	○ 사업관리단 -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u>공사에</u> 사업관리단을 설치 - (좌 동)

안 제8조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단을 두고, 대미투자 대상 사업 발굴, 대미투자 사업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국에 소재한 투자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려는 취지임.

다만, 사업관리단 소속에 관하여,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정

일영·박수영·정태호의원안은 사업관리위원회와 같이 산업통상부에 두도록 하고, 안도걸의원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두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대미투자 대상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투자지원단을 미국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투자지원단이 아닌 공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⁴⁵⁾ 재외공관 이외의 정부 조직을 미국 현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이 행정·외교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투자 사업 발굴 및 사업 관리는 정책 집행·운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과 공사 간 효율적인 업무배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촉진을 위해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 해당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출자와 대상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은 국토교통부 내 조직이 아닌 사업 투자·출자를 직접 집행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서 담당함.⁴⁶⁾

45)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투자공사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함.

46) 「해외건설 촉진법」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또한, 제정안은 투자지원단을 미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외공관 설치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조직을 해외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참고로, 재외공관이 아닌 별도의 정부 조직을 미국 내에 두는 것에 여러 실무적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주미대사관의 산업통상부 상무관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인력 등을 활용하여 투자지원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2.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인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에 참여한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인수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대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
2.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
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의2(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8조의16(업무) 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적의 공무원이 투자지원단에 소속되어 미국에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투자지원단은 주미대사관 소속이 아니므로 소속직원이 장기체류를 위한 외교관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투자지원단을 미 국무부에서 인정하는 기타 외국 정부기관(Miscellaneous Foreign Government Organization)으로 승인받고 비자를 발급받는 대안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미 국무부 승인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둘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사업관리단의 기능상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실무조직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및 안건을 작성하고, 사업관리위원회의 경우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 주된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공사의 기능과 상업적 합리성을 심의하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관리단의 기능이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관리단을 신설하기보다는, 위원회 운영은 산업통상부 내 기존 조직에서 담당하고, 사업 발굴·조사 등 실질적인 투자 실무는 공사에서 수행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법률에 ‘산업통상부 소속 사업관리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셋째, 정태호의원안 제10조제4항은 사업관리단이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검토업무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⁷⁾

이는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수익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고도의 전문성과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담 조직을 활용하여 검토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한 이행, 전략적 투자 사업에 참여할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단체 또는 사람의 추천 등 다양

47) 정태호의원안 제10조(사업관리단)

④ 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업무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담기관의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개별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민간기관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 전담기관으로 이전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미투자는 외교·통상적으로 높은 민감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전담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공무원의 제 적용 및 이에 상응하는 벌칙 규정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 등(정일영의원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정일영의원안
○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 - 공사 및 운영위는 전략적투자 사업별로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기획, 심의, 투자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 - 공사는 전략적투자 사업이 완료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이행 단계에 도달한 경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에 보고 - 운영위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공사의 투자방식, 집행기준 및 위험관리방안을 보완 가능 ○ 위원회 간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 운영위는 전략적투자의 기획·총괄, 기금의 운용 방향, 개별 사업의 투자결정 및 집행을 심의·의결 - 사업관리위는 전략적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수행 - 한미 협의위는 양국 간 협력사업의 제안, 투자조건 조정, 투자회수 등 외교적 사항에 대하여 미국 측과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 - 위탁기관은 운영위 또는 공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투자집행을 수행하며, 해당 업무의 결과 및 진행현황을 공사에 정기적으로 보고

정일영의원안 제4조의2는 전략적투자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대미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국익 창출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려는 장치로 이해됨.

동 법안은 사업별로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있는데, 전략적 투자는 반도체, AI, 핵심광물 등 회수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은 첨단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무적 이익과 같은 단기적·정량적 지표에 치중할 경우 장기적 안보 가치나 공급망 확보와 같

은 전략적 가치가 저평가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단기 성과와 중장기 전략목표 간의 균형을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정일영의원안 제4조의3은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위탁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각 항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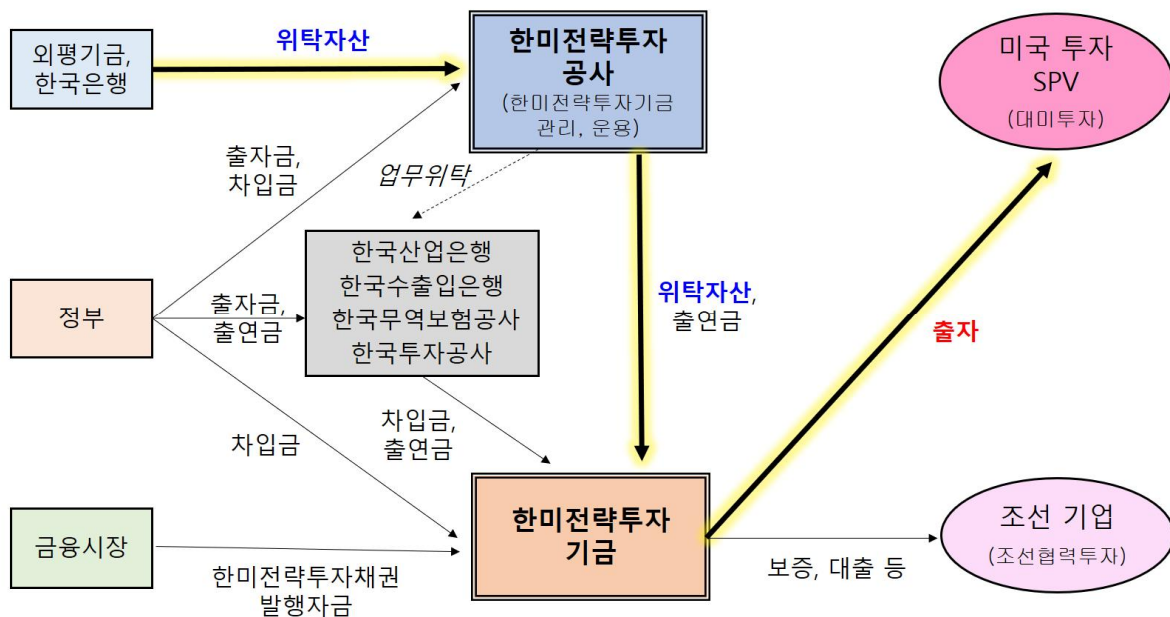
그러나 이미 제4조, 제6조 및 제10조에서 각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각각 규율하고 있고, 제9조에서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별도로 규율할 실익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장 및 제4장)

가. 자금 조달 및 투자 체계 총괄 검토

제정안(김건의의원안 제외)은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임. 이는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 기금을 설립함으로써 재원 적립, 운용,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제정안에 규정된 자금 조달 및 투자 체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고,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으며,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재원을 확보함. 그리고 위탁자산 등 자금의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정부

가 지정한 투자기구(이하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하고, 위탁자산을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며,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함.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보증 심사와 투자 관련 업무 등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려는 취지임.

한미전략투자기금은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출연금,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위탁된 자산,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됨. 그리고 자금을 미국 투자 SPV 출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 및 보증 등으로 사용함.

공사 및 기금 신설을 통한 전략적 투자 집행 등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할 필요성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대미 투자 집행의 탄력성과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사 내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김건의위원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정부 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고, 다른 8개 법안은 기금을 공사 내에 별도로 설치토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⁴⁸⁾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로부터 예결산 심사를 받아 기금 운용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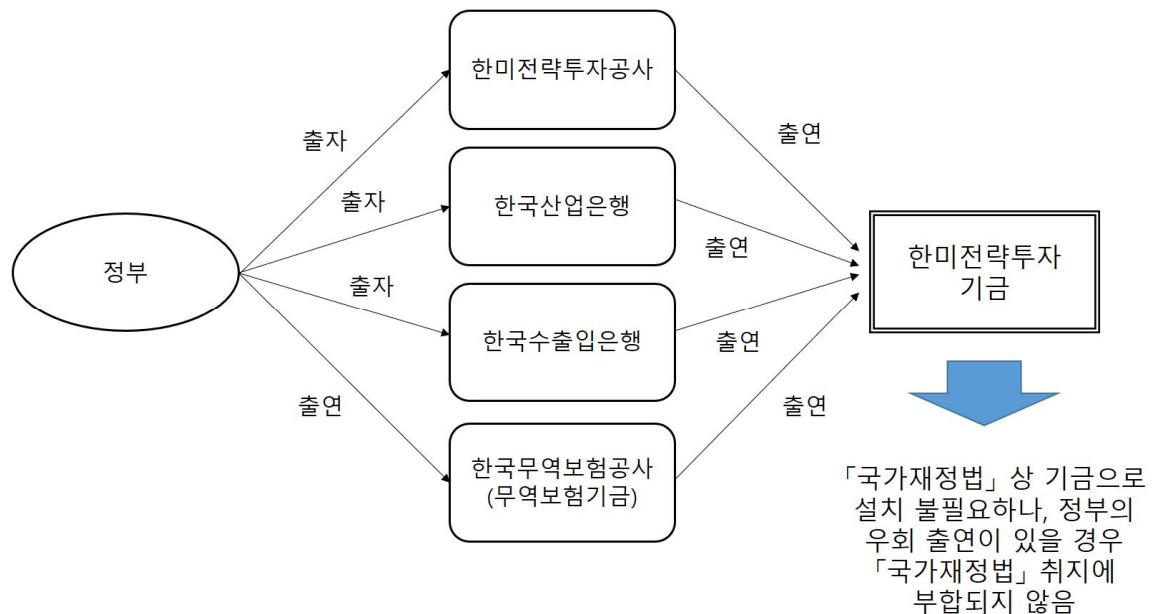
제정안에 따르면 기금은 한미전략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재원을 출연받을 수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출자를 받는 정

48)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채금융기관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기금)⁴⁹⁾는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음.⁵⁰⁾ 이를 감안할 때, 한미전략투자기금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출연을 받는 것은 정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재정을 출연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⁵¹⁾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구조]



유사한 사례로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공급망안정화기금에도 재정의 우회적인 출연이 이루어진 바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정부가 100억원을 출자하

49)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금과 분리된 자체계정이 없음

50) 2026년도 예산안에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재정 출연금 6,005억원이 편성되었음.

51)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면 실질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거쳐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는 것임.

는 사업이 편성되었음.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출연받은 100억원을 기반으로 1,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이는 정부가 재정 100억원을 수출입은행에 출자하고, 수출입은행이 출자받은 재정 100억원을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구조이므로, 정부가 재정을 우회적으로 기금에 출연한 것에 해당됨.⁵²⁾

즉,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 출연을 받지 않아 「국가재정법」 상 기금으로 설치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정부 재정을 우회적으로 출연받는 문제가 있음.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면 이와 같이 정부 재정이 우회적으로 기금에 출연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정부 재정의 우회 출연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을 받지 않아 「국가재정법」 상 기금으로 설치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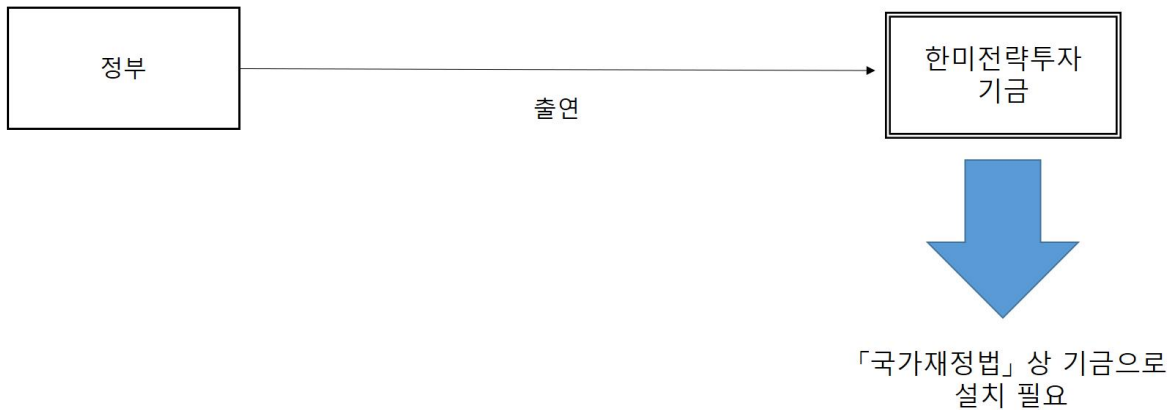
52) 당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에는 수출입은행의 출연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이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재원에 수출입은행의 출연금이 추가되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정부 직접 출연시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구조]



따라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재정경제부가 관리·운용하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대미투자(2,000억불)는 기금에서 외평기금 등의 외화자산을 직접 미국 투자 SPV로 출자할 수 있음. 그리고 조선협력투자(1,500억불)는 기금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자·출연하고, 각 기관이 출자·출연받은 재원을 자본금 및 기본재산으로 하여 대출·보증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① 한미전략투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되는 경우, 예산 편성 과정,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 평가 등 정부 내 통제가 이루어짐은 물론,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 국회 통제도 함께 받게 되는 장점이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이상 변경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⁵³⁾ 이러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통해 중대한 환경변화 발생 시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일부 법안의 취지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⁴⁾

② 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은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위탁자산이 될 전망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으로 관리되고 있고, 한국은행 위탁자산의 경우에도 다수 법안에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실 발생 시 재정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사실상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또한, 제정안과 같이 정부가 외평기금의 외화자산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위탁하고 이를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대미투자(2,000억불)를 하는 것과 정부가 직접 외화자산을 한미전략투자기금에

53)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이하 생략)

54) 홍기원의원안 제40조(국회의 보고 및 승인)는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또는 주요 사업 구조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정부장관이 이를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집행계획을 재작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예탁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미투자를 하는 것은 비록 그 형태는 다르나 국가재정을 활용하여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자산위탁의 형태로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기금에 외화자산을 예탁하여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③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기금을 재정부에 설치하여 재정부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은 운용·관리에 대한 업무를 한국투자공사 및 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유사한 사례로, 재정부 소관 기금 중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재정부가 운용·관리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운용·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⁵⁵⁾ 또한, 외국환평형기금도 재정부가 운용·관리하며 한국은행에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 있음.⁵⁶⁾

5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56)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새로운 공사를 신설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용 부담도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음.⁵⁷⁾

❶ 이에 대하여 재경부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할 경우, 채권 발행 등으로 인하여 국가채무(D1)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임.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부채는 국가채무(D1)에 포함되므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기금을 설치하고 정부보증채를 발행하는 경우와 달리,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하고 채권(국채)을 발행하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임.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대미투자(2,000억 달러)의 경우 외평기금 및 한은의 외화 위탁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당하고,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의 경우에도 민간의 투자를 독려하되 대출·보증을 병행한다는 입장임.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된 것은 아니나, 정부는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의 약 40%(600억 달러= 84조 원)에 대한 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⁵⁸⁾ 1,400원대의 환율과 보증배수 30배를 가정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법정자본금 3조원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7)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투자공사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후술함.

58) 나머지 60%는 민간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규모를 산출하였음.

이와 같은 정부의 가정을 적용하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으로 편입하는 경우, 3조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정책보증이 이루어지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여 자본금을 출자하는지 여부의 형식적인 차이만 있을 뿐, 정부의 재정소요는 변함이 없음.

다만, 대미투자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하여 민간 부문에 대출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의 입장대로 공사를 설립하여 공사채(정부보증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는 국가채무(D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장의 국가채무 증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임.

반면에, 국가재정으로 기금을 편입하여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채무(D1)의 증가로 연계되며, 정부는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에 재정으로 출자하고 기관에서 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소요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음.

예컨대 산업은행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6년 중 반도체 산업 앞 10조원 대출 시 2025년말 BIS비율(잠정) 14.33%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출자액은 1.16조원 수준으로 전망됨.

[산업은행의 반도체 산업 대출 사례]

구 분	‘25년(잠정)	반도체지원	출자	지원·출자후
자기자본(조원)	50.70	-	1.16	51.86
위험가중자산(조원)	353.79	8.07	-	361.86
BIS비율(%)	14.33			14.33

자료: 산업은행

이는 기업에 대한 지원 평균 신용등급을 일반적 수준인 BBB-(1년, 신용)로 산출하여 위험가중치를 80.7%로 산정한 것임.

미국에 대한 조선협력투자의 경우 참여기업 중 대기업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험가중치가 높지 않을 경우 필요한 정부의 출자액은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채무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음.

또한, 대출자금이 상환을 통해 회수되면 그만큼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하므로 정책금융기관은 추가 출자 없이도 기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다른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미래 재정소요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중기 차원에서 대출금이 회수되고 그것이 정부의 정책금융재원으로 활용된다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음.

② 또한, 재경부는 한미전략투자의 특성상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의 사전 수립이 곤란하며, 빈번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운용계획에

서 주요항목인 ‘프로그램’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정부가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투자 집행액을 조정할 수 있음.⁵⁹⁾

예를 들어 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 EDCF 사업들은 계획이 지원대상국의 사정 등으로 빈번하게 변경됨. 그런데 재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변경하고 자금을 신축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동 기금의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⁶⁰⁾ 내 집행률이 낮은 지역별 세부사업에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으로의 계획액 변경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연도별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계획액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21			2022			2023		
	계획액		증감액 (증감율)	계획액		증감액 (증감율)	계획액		증감액 (증감율)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아시아	438,680	230,070	△208,610 (△47.6)	604,699	464,159	△140,540 (△23.2)	705,400	500,307	△205,093 (△29.1)
아프리카	301,583	283,767	△17,816 (△5.9)	277,621	308,175	30,554 (11.0)	304,852	234,680	△70,172 (△23.0)
중동-CIS	77,884	18,154	△59,730 (△76.7)	56,219	21,348	△34,871 (△62.0)	131,972	10,946	△21,026 (△91.7)
중남미	47,042	18,067	△28,975 (△61.6)	44,655	37,006	△7,649 (△17.1)	36,396	13,918	△22,478 (△61.8)
태평양	149,271	176,656	27,385 (18.4)	-	-	-	-	-	-
민간·국제기구	243,736	531,482	287,746 (118.1)	247,362	399,868	152,506 (61.6)	324,356	743,125	418,769 (129.1)

* 2022년 당초 계획액은 2022년 제2회 추경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금액임.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59)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20%(금융성 기금은 30%) 이내로 변경할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60)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

③ 그리고 재정부는 기금의 용도가 대미 직접투자와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의 복합 수행에 있어 정부가 직접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서술한 바와 같이 기금의 관리·운용은 투자, 대출, 보증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개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심의과정에서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효과와, 기금을 직접 국가재정으로 편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채무 증가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김건의원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토록 하면서 그 명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금 설치 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⁶¹⁾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임

6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필요성

8개 법률안은 공사의 신규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건의원안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공사 신규 설립의 기대효과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신규 설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통상적 금융지원과 달리 외교·안보·산업 전략이 결합된 장기 투자라는 점에서 전담 공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공사 신설은 자본금 출자를 포함한 재정부담과 함께 사무공간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조직 구성 및 이사회·위원회 운영 등 상당한 행정 비용을 수반함.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를 설립한 입법례는 없고, 단기간 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운영 종료 시 직원의 고용승계와 법적 책임의 승계⁶²⁾ 등의 처리에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제2조에 따르면 투자약정은 MOU 체결일로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이후로는 신규 투자수요가 발생하기보다는 기존 투자에 대한 관리 업무가 주된 업무로 예상되는바, 이를 위해 신규 기

62)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소송의 당사자인 상황에서 조직이 해산하는 경우 그 책임을 승계할 주체가 모호해지는 문제 등

관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미국의 관세 및 수입 규제, 법령·관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MOU의 전제가 실질적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규 공사 운용의 필요성이 더욱 낮아진다고 하겠음.

한편, 한미전략투자기금과 같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금의 신설 사례를 살펴보다라도, 별도의 신규 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금융기관 내에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됨. 실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2020년)과 첨단전략산업기금(2025년)은 한국산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2024년)은 한국수출입은행에 각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 경우 기존 정책금융기관이 축적해 온 금융 지원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기금 신설 사례와 한미전략투자기금 비교]

구분	기간산업안정 기금	첨단전략산업 기금	공급망안정화 기금	한미전략투자 기금
출범 연도	2020년	2025년	2024년	2026년(예정)
근거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공급망안정화법」	「한미전략투자법안」
설치 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미전략투자공사
	기존 기관 활용			기관 신설
용도	기간산업기업 자금지원	첨단전략산업기업 자금지원	공급망안정화 자금지원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를 위한 자금지원

구분	기간산업안정 기금	첨단전략산업 기금	공급망안정화 기금	한미전략투자 기금
재원	•정부보증 기금채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정부보증 기금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산업은행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정부보증 기금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보증 기금채 (한미전략투자채권) •정부 차입금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연금 •기금, 한국은행 위탁자산 •산업은행 등 차입금 및 출연금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참고로, 일본은 미일 관세협상으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대미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기 위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⁶³⁾ 내에 ‘일본전략투자기구’를 신설하였음. 해당 기구는 2025년 10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인 2029년 3월까지 3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재원은 정부재정 및 환율 안정 목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외국환자금특별회계⁶⁴⁾의 외화자금이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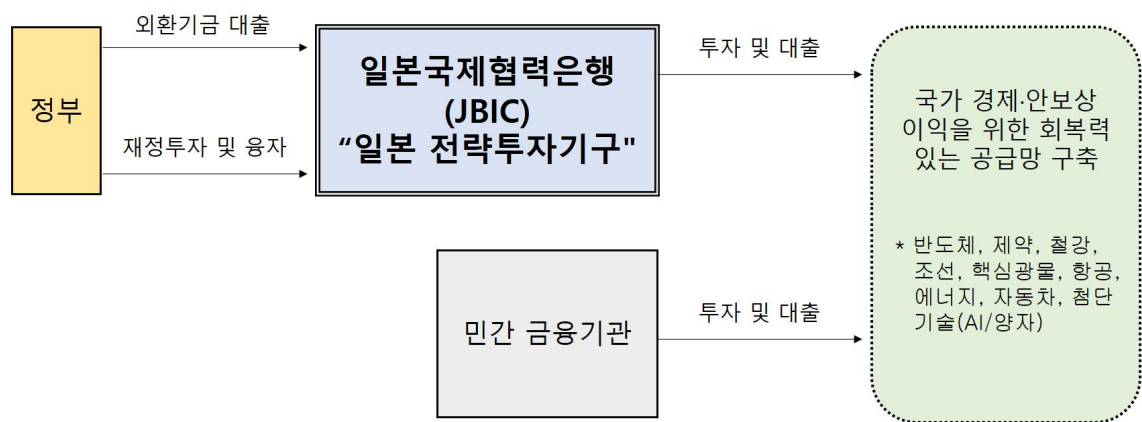
63) JBIC는 일본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 보증, 투자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재무성 산하 정책금융기관임. 우리나라의 한국수출입은행에 해당됨.

64)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에 해당됨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일본 전략투자기구 설립계획]

- JBIC는 “일본 전략투자기구” 를 신설(2025년 10월 ~ 2029년 3월, 총 3.5년)
- 9대 경제·국가안보 핵심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일본과 미국 등 투자 대상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함.

* 반도체, 제약, 철강, 조선, 핵심광물, 항공, 에너지, 자동차, 첨단기술(AI/양자)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대안의 경우, 한국투자공사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① 제정안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계획인데, 한국투자공사는 이미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 운용규모는 2024년 말 기준 2,065억 달러(약 304조원)⁶⁵⁾임.

또한, 한국투자공사는 총 5개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말 기준 미국에 뉴욕지사(2010년 7월 설립)와 샌프란시스코 사무소(2021년 3월 설립)를 운영하고 있어 이미 미국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음.

뉴욕지사는 투자전문인력 18명 등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업무분야는 북미 지역 주식, 채권, 사모주식, 부동산·인프라 투자임.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투자전문인력 2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업무분야는 북미 지역 사모주식, 벤처캐피털 투자임.

[한국투자공사 미국 지사 현황(2024년 말)]

구분	설치연도	인력	투자전문인력	업무 분야
뉴욕지사	2010년 7월	21명	18명	북미 지역 주식, 채권, 사모주식, 부동산·인프라 투자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2021년 3월	4명	2명	북미 지역 사모주식, 벤처캐피털 투자

자료: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

한국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미국 지사를 활용할 수 있어, 미국 소재 투자지원단을 신설할 필요성도 반감될 것으로 보임.

65) 환율 1,472원/달러 적용

② 다음 후보 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을 검토할 수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은 2024년 9월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1년 넘게 운용한 경험이 있음.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보증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2025년 12월 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급망 관련 업무를 하는 인력 정원은 52명임.

일본도 대미투자를 위한 기구를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우리나라의 한국수출입은행에 해당하는 JBIC 산하에 설치하였음.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다양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뉴욕(1978년 설립)과 워싱턴 D.C.(2004년 설립)에 사무소를 운영 중임. 각 사무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음.⁶⁶⁾

❶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대미투자는 외교·안보·산업 전략이 결합된 장기 투자라는 점에서 전담 공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동 업무를 부담케 하는 경우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무구조 또

66)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수출입은행 등 기존 국책은행은 미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른 미국 내 금융규제 적용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미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은행은 비금융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됨.

그러나 미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은 ‘미 「연방예금보험법」상 피보험 은행’ 또는 ‘미국에서 요구불 예금을 수납하거나 상업적 대출을 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의됨. 이를 고려할 때, 미국 내에서 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미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는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특히,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고, 양국 정부 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에 한국투자공사가 투자할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한편, 수출입은행은 주로 대출·보증 업무를 수행하므로 직접투자 경험에 부족하며, 대미투자 규모는 수출입은행이 관리 가능한 수준 이상 이므로, 본연의 정책금융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재정경제부가 관리·운용하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하는 경우, 기금운용의 책임이 정부에 귀속되므로 한국투자공사나 수출입은행의 독립성 훼손이나 재무상태의 악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대미투자(2,000억 달러) 업무는 한국투자공사에, 조선협력투자지원(1,500억 달러) 업무는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등에 분리하여 위탁함으로써 각 기관의 전문성과 기 구축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또한, 재경부는 기금 관리·운용을 외부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관련 분야는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관련 정책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나, 대미 직접투자는 직접투자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없어 동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직접투자를 위해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기관에 기 구축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사 신규 설립 여부는 전담 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미국 투자 SPV 출자 방식

제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모두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경로를 이원화하고 있는데, 투자재원 및 투자실적 관리를 단순화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자 경로를 기금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따른 투자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고 이를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하는 동시에, 일부 위탁자산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기금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하는 구조임.

그런데 이와 같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중복적으로 위탁자산을 활용하여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하면 자금의 흐름이 복잡해지고, 투자 회수 실적 등의 투명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국회 등 외부 감독기관이나 국민의 입장에서조차 전체적인 재원과 투자 집행 실적,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와 이로 인한 리스크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외 투명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음.

또한, 기금과 공사에서 각각 재원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공사와 기금 각각이 개별적으로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을 관리해야 하므로, 전체 관점에서 최적의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⁶⁷⁾

67) 예를 들어, 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고 기금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인 반면, 공사 및 기금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공사와 기금이 분리되어 각각 유동성 위험을 관리해야 하면 외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기금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는 기금에서만 수행할 예정이며, 공사가 위탁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용도로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를 규정한 것은 위탁자산이 기금의 재원으로서 대미투자에 운용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안 제28조제3항은 위탁자산의 용도로서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와 ‘기금의 재원으로서의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 그리고 안 제36조는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원을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제정안은 공사가 위탁자산을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하는 것과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 후 이를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위탁자산을 직접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조문을 수정하여 공사가 직접 위탁자산을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 있으므로 유동성 관리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차입 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음.

나. 한미전략투자공사

1) 설립 등(안 제11조부터 제27조, 제29조)

김병기·홍기원·진성준 ·박성훈·정일영·정태호 의원안	안도결의원안	박수영의원안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 법인 -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 가능 - 자본금: <u>3조원</u> (정부 등이 출자) - 정관: 목적, 명칭, 자본금,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등 기재, 변경 시 운영위 의결 필요 * <u>정일영의원안: 기금 운용 및 투자사업 집행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u> - 공사가 아닌 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 해산: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 (좌 동) - (좌 동) - 자본금: <u>5조원</u> (정부 등이 출자) - (좌 동) - (좌 동) - (좌 동)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 (좌 동) - (좌 동) - 자본금: <u>1조원</u> (정부가 전액 출자) - 정관: 목적, 명칭, 자본금 등 기재, * <u>정관 기재 사항 대통령령 위임 X</u> 변경 시 운영위 의결 필요 - (좌 동) - (좌 동)
○ 임원 구성 등 - 임원: 사장 1명 포함 <u>5</u>	○ 임원 구성 등 - (좌 동)	○ 임원 구성 등 - 임원: 사장(<u>금융 또는</u>

김병기·홍기원·진성준 ·박성훈·정일영·정태호 의원안	안도결의원안	박수영의원안
<u>명</u>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정태호의원안: 이 사에는 국회 추천 1인 포함) - 임기: 사장 3년, 이사 및 감사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 사장 임명: <u>운영위 심의</u> <u>를 거쳐 재경부장관 제</u> <u>청으로 대통령이 임면</u> - 이사 임면: 운영위 심의 를 거쳐 사장이 임면 - 감사 임면: 운영위 심 의를 거쳐 재경부장관 이 임면	- (좌 동) - 사장 임명: <u>재경부장관</u> <u>제청으로 국무회의를</u> <u>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u> <u>회 인사청문 필요</u> - (좌 동) - (좌 동)	<u>투자 관련 분야에 10</u> <u>년 이상 종사한 사람)</u> 1명 포함 3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 - (좌 동) - 사장 임명: <u>운영위 심의</u> <u>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u> <u>친 후, 재경부장관 제청</u> <u>으로 대통령이 임면</u> - (좌 동) - (좌 동)
○ 이사회 - 구성: 사장 및 이사 - 기능: 운영위 회의에 부칠 사항 등 의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구 성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 - 임직원 겸직제한 - <u>비밀누설 금지(정태호</u> <u>의원안: 징계 사유)</u>	○ (좌 동)	○ (좌 동)
○ 공사의 업무 - 업무: 위탁자산 관리 운용,	○ (좌 동)	○ 공사의 업무 - 업무: 위탁자산 관리 운용,

김병기·홍기원·진성준 ·박성훈·정일영·정태호 의원안	안도결의원안	박수영의원안
기금 조성 및 조선협 력투자지원, <u>대출 등(정태호의원안삭제)</u> <u>정부·금융기관 등으로</u> <u>부터의 차입(공사가</u> <u>정부로부터 차입하여</u> <u>생긴 채무의 변제 순</u> <u>위는 공사가 업무상</u> <u>부담하는 다른 채무의</u> <u>변제 순위보다 후순위</u> <u>로 함),</u> <u>외국으로부터의 차입 등</u> - 위탁: 산업은행, 수출 입은행, 무역보험기금, 투자공사 등(추가 위 탁기관 대통령령 위 임)에 업무의 일부 위 탁 가능		기금 조성 및 조선협 력투자지원 등 * <u>대출 등,</u> <u>정부·금융기관 등으로</u> <u>부터의 차입,</u> <u>외국으로부터의 차입</u> <u>제외</u> - 위탁: 산업은행, 수출 입은행, 무역보험기금, 투자공사(추가 위탁기 관 대통령령 위임 x) 에 업무의 일부 위탁 가능
○ 리스크관리위원회(정태호의원안) - 기금운용 및 전략적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률적·운영상 리 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심의사항: 기금 운용계획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적정성 검토 등 ○ 임직원 평가 및 징계(정태호의원안) - 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하여 경영성과, 직무수행능력 및 성실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 가능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 또는 기금에 재산상 손실 또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에는 징계, 보직변경, 직무정지 또는 해임 등의 필요한 조치 가 능		

안 제3장은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

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자본금은 3조원(안도결의원안은 5조원, 박수영의원안은 1조원)이고⁶⁸⁾, 정부 등이 출자함.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5명(박수영의원안 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다만, 안도결의원안, 박수영의원안은 공사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 절차를 규정).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위탁자산의 관리와 운용,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이를 통한 조선협력투자 지원,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임.

또한, 공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함.

제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새로운 공사를 신설하여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려는 취지임.

68) 법정자본금 규모 3조원은 조선협력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보증배수 30배와 환율 1,400원대를 가정하면 조선협력투자(1,500억불)의 약 40%(600억불) 보증 시 약 3조원이 소요됨.

[한미전략투자공사 개관]

구분	내용	비고
명칭	한미전략투자공사	
법인격	법인	
자본금	3조원	안도걸의원안 5조원, 박수영의원안 1조원
해산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함
임원	사장 1명을 포함한 5명(박수영의원안: 3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	사장 임기: 3년 이사, 감사 임기: 2년
이사회 구성	사장 및 이사	
업무	- 위탁자산의 관리와 운용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이를 통한 조선협력투자 지원 -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등 - 한미전략투자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 증서의 발행 - 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 위의 업무에 딸린 업무 -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공사 자본금으로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의원안은 3조 원, 안도걸의원안은 5조원, 박수영의원안은 1조원을 규정하고 있음.⁶⁹⁾

재정경제부는 공사 자본금은 주로 조선협력투자(1,500억 미국 달러)의 금융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조선분야의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수요 등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공사 자본금은 3조원으로 출범 후 향후 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공사의 자본금은 공사 보증 범위 및 보증 배수(보증 배수 30배 기준, 보증비율 40%로 가정하는 경우 자본금 약 3조원, 보증비율 70%로 가정하는 경우 자본금 약 5조원 필요⁷⁰⁾)와 연계되므로 보증 범위 및 배수와 연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보증비율을 높게 계획할수록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가 커지고, 보증 배수를 낮게 계획할수록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가 커짐.

다만, 박수영의원안과 같이 공사의 자본금을 1조원으로 설정할 경우 초기 공사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보증사업의 특성상 자기자본 규모가 보증 공급 한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대규모 보증 수요 발생 시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재정 출연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69) 법안들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신규설립을 전제로 공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공사가 설립될 경우를 전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함.

70) 예를 들어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중 40%인 600억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면,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필요한 자본금은 20억불(600억불÷운용배수 30배)임. 환율 1,400원/달러를 적용하면 이는 2.8조원으로 약 3조원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도결의원안과 박수영의원안은 공사 사장 임명 시 국회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임명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를 철석하게 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 기타 증거를 채택하는 제도를 뜻하며, 공직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정치적 리더로서의 도덕적 권위,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적 조망 등을 적극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14대국회부터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그 방안으로 인사청문회가 논의되었으며, 제16대국회 2000년 6월 19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의결함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u>한국은행 총재</u> , 특별감찰관, <u>한국방송공사 사장</u>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두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과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정책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과 권한을 감안하여 해당 직위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다만, ①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사청문 대상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뿐으로, 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의 장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는 점과⁷¹⁾ ② 전략적투자 총괄 기획 및 운영, 대미투자 대상 사업 선정 등 중요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재정경제부는 공사의 사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71) 이와 관련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가 안도결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음.

넷째, 박수영의원안은 공사의 업무 범위에서 정부·금융기관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과 자금의 대출을 제외함으로써, 공사가 차입을 통해 자체적인 재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공사의 기능을 위탁자산 운용 및 기금 집행에 한정하여,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채 확대 및 재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러한 구조는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국가의 우발채무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대규모 자금이 단기간에 요구되는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의 탄력성이 제한되어 정책 집행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공사의 정관과 관련하여 정일영 의원안은 정관에 ‘기금 운용 및 투자사업 집행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기금운용에 수반되는 재무적·운영상 위험을 고려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전략적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있음.

한편, 박수영 의원안은 정관의 기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점

이 있는 반면, 향후 제도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나 보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함께 있으므로, 통제 강화와 운영 유연성 간의 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여섯째, 정태호의원안 제21조는 공사의 임원인 이사 5명 중 1명 이상을 국회에서 추천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대미·조선 투자 업무 전반에 대해 국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일곱째, 정태호의원안 제27조는 공사의 기금운용 및 전략적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률적·운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고위험 자산 운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험관리 기본방침, 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²⁾

7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금융회사는 아니나, 대규모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투자 및 기금운용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는 필요성은 긍정될 수 있음.

다만, 정태호의원안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위험관리위원회와 달리 투자한도 설정이나 손실허용한도 승인 등과 같은 심의·의결권을 부여받지 않고, 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권고를 중심으로 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민간 금융회사가 아닌 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두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점검·자문 기구로서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구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내부통제위원회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여덟째, 정태호의원안 제30조는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평가·징계·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전략적투자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실, 국가안보 또는 공사의 신뢰 훼손 등을 명시적 징계 사유로 규정한 점은 전략적투자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징계뿐 아니라 보상 및 포상(제4항) 근거를 함께 둔 것은 합리적인 유인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중대한 위험”이나 “지속적· 중대한 성과 부진” 등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고, 투자의 특성상 단기 손실이 중대한 위험으로 오인될 경우 임직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여 소극적인 투자에만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위 규정에서 평가 및 징계 기준과 절차를 객관적·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정태호의원안은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조선협력투자를 위한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등을 규정하면서,⁷³⁾ 다른 법안들과 달리 공사의 업무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73) 정태호의원안 제4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2.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선협력투자 지원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이는 대출·보증 등 금융 집행은 기금을 통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다만, 사후적으로 금융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기금을 관리·운용할 책임은 최종적으로 공사에 귀속되므로, 법률체계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공사의 업무에도 이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바. 출자 또는 투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 관련 권리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2) 자산위탁의 계약(안 제28조)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정일영·박수영 의원안	안도결 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자산위탁의 계약 - 공사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됨 - 다만, <u>기금 관리주체가 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가능,</u> <u>한국은행이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규모 및 범위,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능</u> -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 규정 가능 - 위탁자산 운용: 대미 투자를 위하여 미국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등 * 박수영의원안: 대통	○ 자산위탁의 계약 - (좌 동) - 다만, <u>기금 관리주체 및 한국은행이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규모 및 범위,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능</u> - (좌 동) - (좌 동)	○ 자산위탁의 계약 - (좌 동) - 다만, <u>기금 관리주체가 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가능,</u> <u>한국은행이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규모 및 범위,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능</u> - (좌 동) - (좌 동)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정일영·박수영 의원안	안도결 의원안	정태호의원안
<u>령령 위임 x</u> - 위탁자산은 위탁기관 별로 구분하여 회계처 리 - 위탁자산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 - 공사는 한국은행 위탁 자산에 대해 원금과 약정수익 보장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한국은행이 공사에 위 탁하는 자산의 운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외환시장 안정 및 금 융시스템 안정 기능을 저해하면 안 됨

안 제28조는 공사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 관
 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계약기간에도 불구
 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음.

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위탁자산
 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자
 산의 운용과 수익 처리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임. 위탁자산은 국

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정부가 지정한 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으로서 사용 등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정일영·박수영·정태호 의원안은 ‘한국은행이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규모 및 범위,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명시된 위탁자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한국은행의 위탁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자산의 계약에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안도결의 원안과 같이 적용 대상을 한국은행 외에도 기금 관리주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각 법안은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에 대해서는 그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은행 위탁자산에 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위탁자산에 대한 원금 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공사에 대한 자산

위탁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만 투자자산 내 한국은행 위탁자산 비율이 상당할 경우, 대미투자
로 인한 손실 위험을 사실상 재정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야기할 수 있
음. 따라서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 보장 여부는 개별 자산위탁 계약
에서 정해지도록 하거나, 한국은행 위탁자산도 일정 부분은 투자 리스
크를 공유하도록 계약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임.⁷⁴⁾

또한, 한국은행은 적립금 누적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기
준 20조 5,46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손실이
발생한 적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 4회에 불과하다는 점⁷⁵⁾을 고
려할 때, 공사가 한국은행의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할 필요성
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며, 특히 약정수익 보장은 정부 재
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7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32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②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5) 2000년 이후 한국은행 당기순손실 발생 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당기순이익(억원)	△1,502	△18,776	△17,597	△4,447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연도	당기순이익 (A)	법정적립금 (B=A×30%)	임의적립금	적립금 사용액	적립금 누적액
2015	19,846	5,954	494	494	92,301
2016	27,156	8,147	495	495	100,448
2017	33,779	10,134	415	415	110,582
2018	39,640	11,892	415	415	122,474
2019	32,137	9,641	354	354	132,115
2020	53,131	15,939	339	339	148,054
2021	73,659	22,098	341	341	170,152
2022	78,638	23,592	266	266	193,744
2023	25,452	7,636	270	270	201,379
2024	13,622	4,087	315	315	205,466

주1: 법정적립금은 한국은행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

주2: 현재 임의적립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용도로만 추가 적립하고 사용 중

참고로, 「한국투자공사법」도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과 같이 위탁자산에 대해 그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음.⁷⁶⁾

⁷⁶⁾ 「한국투자공사법」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정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사가 위탁자산을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봄.

3) 회계 등(안 제30조부터 제32조)

김병기·홍기원·박성훈·정일영·박수영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회계 - 공사, 기금, 위탁자산은 회계를 각각 구분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예결산 - 재경부장관 승인 필요	○ (좌 동)	○ 예결산 - <u>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재경부장관 승인 필요, 변경 시 동일</u> - <u>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재경부장관에게 예산안 제출</u> - <u>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결산서를 운영위 의결을 거쳐 재경부장관에게 제출</u> - <u>공사는 예산서, 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에 지체 없이 보고</u>	○ 예결산 - <u>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경부장관 승인 필요, 변경 시 동일</u>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u>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u>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u>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총당한 후의 결산이익</u>

김병기·홍기원·박성훈·정일영·박수영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u>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u>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 <u>결산 시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u>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 - (좌 동)	- <u>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u>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 - (좌 동)	<u>금을 적립 및 처리</u> - (좌 동) - (좌 동)

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는 공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임.

안 제30조는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공사의 회계,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회계 및 위탁자산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31조는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임.

안 제32조는 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관해 개별 법률에서 정부가 적립금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⁷⁷⁾

77)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손실금의 보전)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

한편, 진성준의원안은 공사의 회계처리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도록 하고 손실금은 해당 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태호의원안 또한 이익금을 적립하되 감가상각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음.

또한, 안도걸의원안은 공사의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기를 명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예산서 및 제출한 결산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재무제표와 같은 공사경영 관련 자료 및 자산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공고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공사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경영을 위해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유사하게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한국투자공사법」 제36조에서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회

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계감사보고서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자산의 총 자산운용규모,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⁸⁾

따라서, 안도결의원안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규정과 함께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자료 공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 제4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⁷⁹⁾ 안 제31조는 공사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률 조문 간 내용상 충돌이 있는바, 법체계상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한국투자공사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사의 예산 및 결산

78) 「한국투자공사법」

제36조(공고) ① 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 회계감사보고서
3.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자산운용규모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4.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7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둔다.

11.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별도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⁸⁰⁾

셋째, 안도걸의원안은 공사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예산서 및 제출한 결산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결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재정경제부는 제정안 제40조⁸¹⁾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제정안 제40조는 보고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도걸의원안과 같이 보고 시기(재정부장관에게 제출·승인 후 지체 없이)를 명시하는 제정안은 공사 예결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김병기·홍기원·박성훈·안도걸·정일영·박수영의원안은 결산순손실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진성준의원안 및 정태호의원안과 같이 이익금의 처리방법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0) 「한국투자공사법」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40조(국회 보고) 공사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정태호의원안은 적립 및 처리 대상 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자본가치를 보존한 후의 순수한 이익만을 처리 대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한국산업은행법」은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40% 이상을 적립하고 잔여 이익금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⁸²⁾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법」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25% 이상을 적립하고 잔여 이익금을 이사회 의결을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³⁾

따라서 공사의 경우에도 순이익금을 적립토록 하되, 일부를 적립하고 잔여 이익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2)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이익금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2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補填)한 후 자본금에 전입(轉入)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때에는 현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정태호의원안 제34조)

정태호의원안	
○ 분쟁조정	
- 이 법에 따라 체결되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 및 분쟁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	
- 분쟁 조정은 국제법 및 국제적으로 승인된 상거래·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정태호의원안 제34조는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개별 계약 분쟁 발생 시, 협의 및 분쟁조정을 우선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외교·통상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수의 국제투자협정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를 통해, 피투자국이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국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중재기구(ICSID⁸⁴⁾, UNCITRAL⁸⁵⁾ 등)에 직접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⁸⁶⁾

84)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의 기구로, 「국가와 타국 국민 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이사회 협약)」에 근거하여 설립됨.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상설 중재 기구임.

85)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무역법의 점진적 조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UN 산하 기구임. 특정 기구가 중재를 진행하기보다, UNCITRAL이 제정한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이 국제 중재 계약에서 널리 차용되며, 주로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나 주요 중재지의 중재 절차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됨.

86) 또한, MOU는 대미투자 이행으로 인해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일치 또는 분쟁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소송 전 분쟁 조정을 강행적 절차로 규정하기보다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원칙적·권고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 한미전략투자기금

김병기·홍기원· 진성준·박성훈· 정일영·정태호 의원안	안도결의원안	박수영의원안	김건의의원안
○ 한미전략투자기금 - 재원: <u>공사 출연금</u>,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 전 동의를 얻은 <u>위탁자산</u>,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u>정부 차입금</u>, <u>기관 차입금</u> 및 <u>출연금</u>, <u>법인, 조합, 단체</u> <u>등의 출연금</u>, <u>그 밖에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재원</u> <u>등</u> - 한미전략투자채권: <u>공사가 발행</u>, <u>재경부장관에게</u> <u>사전 신고 필요</u>, 특수채증권으로 취급 *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 한미전략투자기금 - 재원: <u>공사 출연금</u>,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 전 동의를 얻은 <u>위탁자산</u>,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u>정부 외의 자의</u> <u>출연금 및 기부금</u>, <u>그 밖에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재원</u> <u>등</u> - (좌 동)	○ 한미전략투자기금 - 재원: <u>공사 출연금</u>,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 전 동의를 얻은 <u>위탁자산</u>,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u>정부 차입금 등</u> * 추가 재원 <u>대통령령 위임</u> x - (좌 동)	○ 기금 - 재원: <u>정부 출연금</u> <u>3조원</u>,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 전 동의를 얻은 <u>위탁자산 및 차입금</u>, <u>출연금</u>, 전략적투자채권발 행자금,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u>정부 차입금</u>, <u>법인, 조합, 단체</u> <u>등의 출연금</u>, <u>그 밖에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재원</u> <u>등</u> - 전략적투자채권: <u>재경부장관이 발</u> <u>행</u>, <u>운영위 심의의결</u> <u>필요</u>, 특수채증권으로 취급 *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김병기·홍기원· 진성준·박성훈· 정일영·정태호 의원안	안도결의원안	박수영의원안	김건의의원안
대해 보증 기능 (국회 동의 필 요)			대해 보증 기능 (국회 동의 필 요)
○ 기금의 관리 - 공사가 관리, 운용 - 재경부장관은 공사의 관리, 운용을 감독 - 기금은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가능			
○ 기금의 운용 - 용도: 미국 투자 SPV에 출자, 조선 협력투자 지원, 차입금 상환, 채권 원리금 상환,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u> - 여유자금 운용: <u>국채·공채 등의 매입,</u>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 여유자금 운용은 「국가재정법」 준용(<u>정태호의원안: 징계규정에서 별도 규정</u>)	○ 기금의 운용 - (좌 동) - 여유자금 운용: <u>국가·지자체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매입,</u>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 기금의 운용 - 용도: 미국 투자 SPV에 출자, 조선 협력투자 지원, 차입금 상환, 채권 원리금 상환 등 * <u>추가 용도 대통령령 위임 x</u> - 여유자금 운용: <u>국채·공채 등의 매입,</u>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김건의의원안을 제외한 8개 법안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공사의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임.

한편, 김건의원안은 재정경제부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원은 정부 출연금 3조원,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전략적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임.

한미전략투자채권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발행하는 채권⁸⁷⁾으로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음.⁸⁸⁾ 이는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⁸⁹⁾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⁹⁰⁾,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발행하는 공

87) 김건의원안의 전략적투자채권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발행하는 채권

88)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9)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90)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급망안정화기금채권⁹¹⁾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것과 같은 구조임.

기금은 조성한 재원을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며, 여유자금은 국채 매입,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할 수 있음.

기금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관리·운용하며 공사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감독함.⁹²⁾

[한미전략투자기금 개관(김건의원안 외 8개 법안)]

구분	내용
명칭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기관	한미전략투자공사
재원	1. 공사의 출연금 2.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3. 제2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안도걸의원안 제외) 5.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출연금(박수영의원안 제외)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9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2) 김건의원안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직접 관리·운용함.

구분	내용
	6.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박수영의원안 제외) 7.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박수영의원안 제외)
채권발행 방법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재경부장관에 신고 *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 가능(국회 동의 필요)
관리체계	- 공사가 관리·운용 -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 -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가능
업무	-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 조선협력투자 지원 -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채권의 원리금 상환 - 위탁자산과 그 운용수익의 반환 - 기금의 운용비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박수영의원안 제외)

한미전략투자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박수영의원안을 제외한 8개 법안은 기금의 재원을 나열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규정하여, 행정부 재량으로 재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 재원은 대미투자 부담의 귀속주체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대통령령 위임규정은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대미투자를 위한 자금의 역할을 하므로 기금의 재원은 대미투자를 위한 자원 조달 부담이 누구에

게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 대통령령을 통해 정부가 기금의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 국회의 심의 없이 대미투자의 부담 주체가 추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첨단전략산업기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모두 기금 재원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열거하고 있음.⁹³⁾

둘째, 안도결의원안은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을 기금 재원에서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 투자로 인한 손실이 국가채무로 전이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재정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93)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아래와 같음.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은 아래와 같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다만, 정부 차입금은 기금의 자체 수입만으로 사업 자금 조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활용될 수 있는 보완적 재원 조달 수단으로서, 그 허용 여부는 재정부담의 확대 가능성과 재정운용의 유연성 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박수영의원안은 법인·조합·단체의 출연금 및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로부터의 차입금·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국가재정의 우회적 출연을 방지하고, 전략투자기금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취지로 보임.

이러한 재원 구조는 국가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MOU에 따라 일정 시점 내 대규모 자금 집행이 요구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기금 재원에 충분한 탄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투자 집행 지연 또는 이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제정안은 기금의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정 간 구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대미투자는 우리나라가 직접 투자 재원을 투자·출자하는 반면, 조선협력투자는 대출·보증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등을 지원하는 것임. 그리고 대미투자는 현금흐름이 한국과 미국에 5대5 또는 1대9로 배분되는 반면⁹⁴⁾, 조선협력투자는 수익이 전부 우리나라 기업에 귀속됨.

이처럼 양자는 투자의 주체(국가 vs 민간)와 성격(현금 vs 보증·대출)이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운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구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 운용 계정 또한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재경부는 대미투자 사업의 초기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계정 간 재원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는 계정 간 자원 이전에 대한 요건 등을 법률에 추가 규율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계정 구분 자체를 의무화하지 않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섯째, 박수영의원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기금의 용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94)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은 실제 원리금 상환 완료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간주배분액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간주배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분배될 때까지는 5대5로 배분되나, 그 이후 발생하는 분배금은 1대9로 배분되며, 이는 실제 원리금 회수 수준과는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같은 위임 방식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특정하지 않아, 하위 법령을 통해 사실상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포괄적 위임으로 볼 소지가 있음.

또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운용 용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있어 충분한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안도걸의원안은 국채·공채 매입을 포함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매입으로 여유자금 운용 수단을 한정하고 있음.

이는 전략투자기금이 대미투자 등 외화 기반의 전략적 투자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유자금 운용 과정에서도 환전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전이를 차단하고, 국내 채권시장이나 재정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외화표시채권은 발행 주체가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신용도 및 유동성 측면에서 국채·공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을 수 있으며, 여유자금 운용 수단을 특정 자산 유형으로 한정할 경

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전략투자기금의 외화자산 성격을 유지하려는 취지와,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요구되는 탄력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업무의 위탁(김건의원안 제8조부터 제11조)

김건의원안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 재경부장관은 전략적투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투자공사 등에 위탁 가능 - 위탁기관의 업무: 투자대상 사업의 실사 및 평가, 투자자산의 관리 및 운용 등 ○ 업무위탁의 절차 및 방식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 회계처리 방식, 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재경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 위탁기관의 의무 및 감독 - 의무: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 비밀 누설 금지, 업무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재경부장관 및 운영위에 보고 등 - 감독: 재경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 운영위에 보고

김건의원안은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재정경제부가 직접 대미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 행정을 강조하고 신설 조직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대미투자는 개별 사업의 수익성 판단을 넘어 산업정책, 통상 환경, 공급망 및 안보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금융·재정 중심의 재정경제부가 단독으로 이를 주도할 경우, 실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전문적인 산업·통상 정책 역량이 투자 결정 과정

에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전담기관 없이 재정경제부가 다수의 위탁기관을 상대로 투자 집행·관리·성과를 직접 통제하는 구조는 업무의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투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 등 유관 부처와의 실무적 협력이 법제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병행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보칙(안 제5장)

가. 자료 비공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및 제42조 등)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정일영·안도걸· 정태호의원안	박수영의원안	김건의의원안
○ <u>자료 비공개</u> - 정부 및 공사는 <u>공사, 운영위, 사업관리위원회 및 한미 협의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공개</u> - <u>진성준의원안: 국가가 「국회법」 등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 상임위 의결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공개 불가</u> - <u>안도걸의원안: 국가가 비공개를 전제로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 필요</u>	○ <u>자료 공개</u> - 정부 및 공사는 <u>공사 및 한미 협의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국회에 등에 공개</u>	○ <u>자료 비공개</u> - 정부 및 위탁기관은 <u>운영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u>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정일영·안도걸· 정태호의원안	박수영의원안	김건의의원안
- 정일영의원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비공개회의 등으로 보고 - 정태호의원안: 국회가 법률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로 제출하거나 자료를 열람		
- 자료 관련 금지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 등		
○ 비밀 누설 금지 - 운영위 위원, 사업관리 위원, 공사 임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 금지		
○ 감독 - 운영위는 공사의 사장에게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 가능 - 관계전문기관에게 검사업무 위탁 가능		
○ 면책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한국은행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정태호의원안: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함 (박수영의원안: 면책할 수 있음) * 정태호의원안: 기준 및 절차 대통령령 위임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사의 임직원과 운영위 및 사업관리위 위원 및 그 직(정태호의원안: +분야별 전문위, 분야별 소위, 리스크관리위)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정태호의원안: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제5장 보칙은 자료의 비공개, 비밀누설 금지, 감독, 국회보고, 면책,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정일영·정태호의원안은 정부 및 공사로 하여금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강행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도걸의원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재량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같은 항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⁹⁵⁾하고 있음.

제정안은 「공급망안정화법」⁹⁶⁾ 및 「소재부품장비산업법」⁹⁷⁾과 같

9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9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6조(자료의 비공개) ① 정부와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1조제2항,

이 국가안전 보장 또는 기업 경영활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를 비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략적투자는 그 특성상 국가 경제안보 및 기업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누구든지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9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소재·부품·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⑤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진성준의원안은 국회가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개 가능)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안도걸·정일영·정태호의원안 또한 국회가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정보 유출로 인한 국익 침해 및 기업 활동 악영향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나,

각 제정안은 정부 및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비밀과 국가 전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부 및 공사의 투자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감독을 진행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종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박수영의원안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다른 법안들과 달리 전략적투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 사유도 공사 및 한미 협의위원회의 업무로 한정하되,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는 대미투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비공개 결정 여부를 행정부의 재량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외부 통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자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자료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열람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공개 기준 및 지정의 적합성에 대하여 매년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김병기·홍기원·박성훈·안도걸·정일영·박수영의원안은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보칙’에, 진성준의원안은 ‘제6장 별칙 및 과태료’에 규정함.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⁹⁸⁾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⁹⁹⁾은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보칙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칙에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98) 746p, 2024년도

99) 558p, 2024년도

나. 국회 보고 및 동의 등(안 제40조 등)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안도걸·정일영·박수영·김건·정태호의원안

○ 국회에 대한 현황 보고

- 공사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김병기의원안, 홍기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 공사는 전년도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진성준의원안)
- 정부는 연도별 대미투자 집행계획 및 전년도 집행 결과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안도걸의원안)
- 공사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 추진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회계연도별 총 투자 상한액의 100의 80을 초과하는 금액이 집행된 경우 지체 없이 집행현황과 향후 집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안도걸의원안)
- 공사는 매 회계연도에 2회 이상, 사업별 투자 집행 현황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정일영의원안)
 - * 국회 또는 소관 상임위가 공사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사 사장의 출석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운영위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대미투자 사업 목록 및 투자금액 등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 사업관리위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상업적 합리성 고려사항 검토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정일영의원안)
 - * 국회 또는 소관 상임위가 운영위 또는 사업관리위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각 위원장에게 출석 및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운영위와 사업관리회 및 공사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박수영의원안)
- 산업부장관은 운영위의 전략적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기 이전에 「통상조약법」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와 국내산업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에 즉시 보고(박수영의원안)
- 재경부장관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위탁 업무의 수행실적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김건의원안)
- 공사는 매년 전략적투자의 추진 및 성과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정태호의원안)
- 공사는 기금의 운용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정태호의원안)

○ 국회에 대한 투자 등의 사전보고

-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홍기원의원안)
- * 상임위는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 공사와 재경부장관은 의견을 최대한 존중
- 공사는 10억 미국 달러 이상의 개별 투자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안도걸의원안)

○ 투자 등에 대한 국회 동의

- 운영위는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투자 집행을 의결 시 국회 사전 동의 필요(진성준의원안)
- 운영위는 사업추진 여부 의결 시,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박성훈의원안)
- * 산업부장관은 국회가 동의한 경우 미국과 사업 추진에 대해 협의,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
- 30억 미국 달러 이상의 개별 투자,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배 비율의 조정, 공사 총자산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산 취득 및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상임위 동의 필요(안도걸의원안)
-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 동의 가능
- 정부 및 공사는 사업관리위에서 심의한 전략적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 필요(박수영의원안)
- 운영위는 투자결정 및 집행 의결 시, 국회에 보고하고, 「통상조약법」상 비준 동의 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김건의의원안)
- * 재경부장관은 국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추진 등에 미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 중대한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국회 보고(홍기원의원안)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 사유 발생 시 운영위는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의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 중요한 사유 발생 시 운영위는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의 집행계획을 재작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외투자 영향평가서의 국회 제출(홍기원의원안)

- 공사와 재경부장관은 전략적투자가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 상임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투자 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공사 또는 재경부장관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가능, 공사와 재경부장관은 의견을 최대한 존중

9개 법안들은 국회 보고 및 동의와 관련하여, 정기 보고, 사전 보고, 사전 동의 등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간단히 요약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¹⁰⁰⁾.

[9개 법안의 국회 보고 및 동의 관련 개요]

	김병기 의원안	홍기원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김건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정기 보고	○	○	○	○	○	○	○	○	○
사전 보고	x	○	x	x	○	x	x	x	x
사전 동의	x	x	○	○	△	x	○	○	x

대미투자가 국가경제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대미 투자계획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회 통제 장치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다만, MOU에 존재하지 않는 국내 의무 부과로 인하여 통상마찰이 발생할 위험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통제의 적정 수준에 대

100) 국회 사전 보고 및 사전 동의 시점에 대하여는 홍기원(사전보고)·진성준(사전동의)의원안은 투자집행 전(또는 투자집행 의결 전), 박성훈의원안(사전동의)은 후보사업 대미협의 전, 안도걸의원안(투자금액에 따라 사전보고 또는 사전동의)은 투자하려고 할 경우, 박수영의원안(사전동의)은 의사결정 및 집행 전, 김건의의원안(사전동의)은 투자결정 및 집행 의결 후로 규정하고 있음.

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국회 통제의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토함.

□ 정기 보고

제정안은 법안별 다양한 방식으로 대미투자 업무 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회 또는 상임위에 정기 보고토록 하고 있음.

이때 보고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안들은 각각 공사,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재경부장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고의 대상도 국회와 상임위가 혼재되어 있음.

한미 전략적 투자는 대규모 국가 재원이 투입되고 외교·통상적 중요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형태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보고의 주체를 “정부”로 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공식 서류로 작성·제출토록 하되, 그 주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봄.

현재 각 법안에서 국회 또는 상임위에 제출토록 규정한 자료를 살펴보면, ① 한미전략투자기금 관리·운용보고서, ② 해외투자 영향평가서, ③ 대미투자 협의 결과보고서, ④ 연도별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의 집행계획 및 전년도 집행 결과보고서, ⑤ 전략적투자 성과보고서 등이 있는데, 연차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포함할 내용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개별적인 투자 결정은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운영위원회가 확정하고, 공사가 이를 집행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내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공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전 보고와 사전 동의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법안은 대미 투자 전 사전 보고를, 일부 법안은 대미 투자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명문화하고 있음.

국가재정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통해 통제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긍정될 수 있으나,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미 투자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는 MOU에 따른 투자 일정 이행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정부는 사전 보고 역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거나 대미 투자 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투자 집행 이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절차적 의미를 가지며, 국회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투자에 대한 반대나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음.

다만, 행정부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기원의원안 및 안도걸의원안과 같이 투자 규모 또는 중요도에 따라 국회 보고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을 병행 검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홍기원의원안은 국제·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투자 집행계획을 재작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태호의원안은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중대한 환경 변화는 향후 국민경제 및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투자 집행계획의 경우 당초 국회 승인 대상이 아니었으나 홍기원의원안과 같이 재작성하는 경우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대응의 적시성 및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고 내용 및 제출 서류

보고내용 및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우선 홍기원의원안은 전략적투자가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이는 대미 투자가 대규모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장기·비가역적 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적 위험과 과급효과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다만, 대규모 대미 투자가 미치는 영향은 국가재정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 산업 및 거시경제 전반에 과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재정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작성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박수영의원안은 운영위원회의 대미 투자 의결 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내산업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김건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조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영향평가 실시와 보완대책 수립 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속한 투자 집행이 요구되는 대미투자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회의록 작성 등

(홍기원의원안 제43조·안도걸의원안 제10조·박수영의원안 제8조)

홍기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박수영의원안
○ 회의록 - 작성대상: 운영위, <u>이사회</u> -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u>국가안보 관련 내용은 요약본 제출 가능</u>) - 상임위는 회의록 원본 제출 요구 가능, 공사는 비공개 회의 방식으로 제출 필요 - 공사는 제출 및 열람 요구 거절 불가, <u>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상임위에 제출</u>	○ 회의록 - 작성대상: 운영위, <u>사업관리위, 한미 협의회</u> -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u>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u>)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로 제출 가능	○ 회의록 - 작성대상: 운영위, <u>사업관리위</u> - 국회 소관 상임위가 <u>요구할 경우 제출</u> - 국가 안전보장에 <u>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u> - 국회 소관 상임위 위원은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홍기원·안도걸·박수영의원안은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작성 의무와 함께 작성된 회의록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홍기원의원안은 추가로 상임위가 회의록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비공개회의 방식으로 원본을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회의록 원본 작성 및 제출은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국익침해 및 기업 손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나 개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¹⁰¹⁾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각각 재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회의록 작성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회의록 중 국가안보 또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정보공개법」¹⁰²⁾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1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7. 벌칙 및 과태료(안 제6장)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안도걸·정일영·박수영·정태호 의원안

○ 벌칙

-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및 한미 협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유사명칭 사용,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태호의원안 삭제

제6장은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및 한미 협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다른 법률에서도 채택되는 방식이며, 벌칙 액수도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별 칙 관련 유사입법례]

구분	법률	내용
비밀 누설	「한국투자공사법」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u>비밀을 누설한 사람</u> 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및 정보의 부정한 취득, 사용 또는 공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경제 안보상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정보를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료·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정보를 사용하거나 공

구분	법률	내용
		개하는 행위 제50조(벌칙) ⑤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임원 및 직원이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다른 법률에서도 채택되는 방식이며, 과태료 액수(500만원 이하)도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과태료 관련 유사입법례]

구분	법률	내용
유사명칭 사용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직무 외의 영리를	「한국투자공사법」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구분	법률	내용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안도결의원안은 해당 조항을 제5장 보칙에 규정하였는데,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¹⁰³⁾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¹⁰⁴⁾은 벌칙 장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43조 및 제44조는 「제6장 벌칙 및 과태료」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103) 751p, 2024년도

104) 564p, 2024년도

8. 부칙

김병기·홍기원·진성준·박성훈·안도걸·정일영·박수영 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건의의원안
○ 시행일: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설립위원회 - 재경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최초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설립비용: 공사가 부담 ○ 공사의 경영평가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운영법」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외부 관계 전문기관에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 (좌 동) ○ 설립위원회 - 재경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설립위원 7명 이내)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권리 의무의 승계 -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투자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법 시행 전 예비검토의 승계 - 법 시행 전 대미투자 예	○ (좌 동)

김병기·홍기원·진성준· 박성훈·안도걸·정일영· 박수영 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건의의원안
	비검토와 관련하여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 한 사안은 이 법에 따른 사업관리위의 심의 및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	

부칙은 법률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공포한 날부터 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¹⁰⁵⁾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외부 관계

1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공사의 경영평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 제4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공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의 경영평가를 3년 유예해야 하는 사유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는 공사 설립 초기에는 투자 집행이 본격화되지 않아 경영성과 평가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고, 평가 부담을 경감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그러나 대미 전략투자는 국가경제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투자 성과와는 별도로 공사의 조직 운영, 의사결정 체계,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등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설립 초기 단계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에 의해 2018년 9월에 설립되었는데,¹⁰⁶⁾ 2019년 1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19년부터 경영평가를 받았음.¹⁰⁷⁾

문 의 처

02)6788-5148

10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107) 새만금개발공사는 경영평가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가등급 B를 받았음.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

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민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 한국과 미국은 망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경제 번영 수호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미국”)는,

강력하고 협력적인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25년 7월 30일에 발표된 미국과 한국 간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하며;

한국과 한국 기업이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하고;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1,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승인 투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또한 한국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추가 투자(이하 “투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투자 선정

1.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주: 별첨 정의 조항에 별도로 정의됨)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한다.

투자 실행 및 운영

2. 투자 약정(commitment)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특정 날짜나 시간까지 또는 기타 사유로 “투자”를 청산하거나 처분할 의무는 없다.

3. 본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투자” 및 “승인 투자”를 추천하고 감독하기 위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를 설립한다.

4.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투자위원회가 수시로 선정하는 기타 위원들로 구성된다. 단일 또는 복수의 미국 연방 부처 또는 기관의 지분 또는 전략적 이익과 관련되거나 이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투자” 또는 “승인 투자”의 경우 “투자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이 관여한다.

5. “투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기 전에, 한국과 직접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한국과 미국이 지명한 자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협의한다. 협의위원회는 특히 각국의 관련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6.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촉진관)는, 본 양해각서에 따라, “투자”, “승인 투자” 및 투자 활동(자금을 제공하는 관련 한국 기관과의 상호조율 포함)을 실행·문서화하고, “투자” 및 “승인 투자”를 관리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자금조달

7. 미국은 수시로 한국의 검토를 위한 “투자”를 제시하며,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해당 “투자”를 선정하였음을 한국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소 사십오(45) 영업일이 경과하는 날짜에 관련 프로젝트의 특정 자금조달 및 자본 지출 단계별 목표(milestone)를 위해 요구되는 관련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촉진관)가 지정한 계좌로 즉시 사용 가능한 미국 달러화 자금으로 조달한다.

8. 한국은 각 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

9. 한국은 단독 재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을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한다. 미국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의 절차 이후에도 한국이 요청된 날짜까지 “투자”금액 전액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이하 “미조달 금액”), 한국은 간주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 수령 권리를 상실하고, 대신 수정배분액(Revis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을 수령하며, 제15항(A)호의 간주배분액에 대한 언급은 수정배분액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미국이 간주배분액에 따라 수령했을 금액과 수정배분액에 따라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 간의 차액을 “캐치업(Catch-up) 금액”이라고 한다. 미국이 “미조달 금액”에 상응하는 캐치업 금액을 수령할 때까지 수정배분액에 따라 분배금이 지급되며, 미국이 해당 금액을 수령한 후에는 간주배분액에 따른 분배금 지급이 재개된다. 한국이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은 또한 미국 대통령이 정한 비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이 본 양해각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자금조달에 실패하지 않는 동안에는 미국은 2025년 11월 14일자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제하의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약정 사항을 준수하고자 한다.

10. 미국은 가능한 경우 (A) “투자” 및 “승인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연방 토지 임대, 접근성, 용수, 전력 및/또는 에너지 공급을 제공하고 (B) 구매계약(off-take arrangements)을 주선하고자 한다. (하기 정의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은 “투자” 및 “승인 투자” 대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련 규제 절차를 가속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벤더(Vendor), 공급업체 및 프로젝트 관리자

11. “투자” 특수목적법인(이하 “SPV”), 프로젝트 SPV, “투자” 및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미국은 가능하고 가용한 경우, 유사한

외국 벤더 및 공급업체 대신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한국은 그러한 벤더 및 공급업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미국은 그러한 추천을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하에 검토한다.

12. 미국은 가능하고 가용한 경우, 각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프로젝트에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현금흐름 및 분배

13. 미국은 새로운 “투자” SPV를 설립한다. 한국은 투자 자금을 직접 “투자” SPV에 조달하거나, 한국 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투자 자금을 직접 “투자” SPV에 조달하도록 주선한다. “투자” SPV는 미국 또는 미국이 지명하는 자가 업무집행자(general partner) 자격으로 운영 및 관리한다. “투자” SPV는 본 양해각서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내용에 합치하게끔 실질적으로 합의된 형태의 거버넌스 및 분배 규정을 두게 될 예정이다 (“투자” SPV의 최종 기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다).

14. 미국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자유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본 양해각서에 따라 분배되도록 한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 기관은 수시로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자유현금흐름을 해당 프로젝트 SPV에 분배(각기, “분배금(Distribution)”)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프로젝트 SPV는 다시 이러한 분배금을 “투자” SPV에 분배하여야 한다.

15. 제9항에 따라, “투자” SPV는 프로젝트 SPV로부터 수령한 모든 분배금을 매년 미국 달러화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 (A) 먼저, 간주배분액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이 미국과 한국에 각각 분배될 때까지, 미국에 50% 및 한국에 50%(미국 세금 공제 후);
- (B) 이후에는 미국에 90% 및 한국에 10%(미국 세금 공제 후).

16. 분배금은 현금 형태로 하며, 먼저 ‘간주배분액’ 정의의 (C)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한 다음 ‘간주배분액’ 정의상 (A)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7. 20년 이내에 한국이 총 간주배분액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이 합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미국은, 제15항(A)호에 따른 미국과 한국간의 분배금의 배분(allocation of Distributions) 및 그와 같은 배분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투자 소개 의무 부존재

18. 미국과 한국 모두 잠재적 투자 기회를 “투자위원회”에 소개할 의무가 없다.

투자 분야

19. 미국 내 “투자”는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집중할 예

정이며, 여기에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한국은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하여 “승인 투자”를 지원(facilitate)하기로 하며, 여기에는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업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조선업을 위한 한국 조선업체들에 대한 대출보증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의 금융을 포함한다. 한국이 본 양해각서에 따른 “승인 투자”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책임의 면제 및 제한

21. 미국, 한국, “투자위원회”, 협의위원회 또는 그 산하 부서, 부처, 직원, 대리인, 지명인 또는 관련자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투자” 또는 “승인 투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판단의 행사,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미국, 한국 또는 기타 어떠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양해각서의 기타 다른 조항 또는 법률상 또는 형평법에 따라 달리 존재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각각 본 양해각서, “투자” 또는 “승인 투자”와 관련하여, 각국 또는 각국의 부서, 부처, 직원, 대리인, 지명인 또는 관련자가 각자의 역할 또는 서비스, 또는 그 자격에서 취한 여하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상대국 또는 타인에게 어떠한 신인 의무(fiduciary duties)도 부담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비용

22. 미국과 한국은 각각 “투자” 및 “승인 투자”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다만, 미국과 한국은 “투자”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실비(out-of-pocket expenses)를 해당 프로젝트 SPV의 가용 자금으로부터 상환받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

불일치 또는 분쟁의 해결

23. 미국과 한국은 본 양해각서의 해석 및/또는 이행으로 인해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일치 또는 분쟁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상호 협의(협의위원회 체계 내에서의 협의 포함)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법적 성격

24. 미국과 한국은 각자의 국내 계약, 법률 및 정책(또는 후속 계약, 법률 또는 정책)(이하 총칭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할 의사를 선언한다.

25.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는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26. 본 양해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각 미국 및 한국의 “관련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및 중지

27. 본 양해각서는 최종 서명 시 효력을 발생하며, 중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미국과 한국은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필수적인 국내법 제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각국은 본 양해각서를 중단할 의사를 상대 국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양해각서를 중지할 수 있으며, 본 양해각서 제23항에 따른 불일치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양국은 이미 이루어진 기존 “투자”나 “승인 투자”의 처리에 대해 우호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본 양해각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에 대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명

2025년 11월 14일, 각각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2부씩 영문본에 서명함.

대한민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부록 A

정의

본 양해각서(“양해각서”)의 목적상:

상환원금 이월 금액이란, 특정 기간에 대해, 분배금 지급 시점에 해당 “투자”에 대한 분배 가능 현금흐름이 간주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 정의(또는, 한국이 투자 금액 전부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수정배분액(Revised Allocation Amount) 정의)의 (B)호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의미한다.

기준 금리란, 미국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의미한다.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뉴욕주 뉴욕시 또는 한국의 서울에서 은행이 법적으로 휴무하도록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어느 “투자”에 대한 **이월 금액**이란, 이자 이월 금액과 상환원금 이월 금액(각각 미지급된 범위에서)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투자”의 존속 기간 동안 간주배분액 정의의 (A)호 및 (C)호에 규정된 분배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어느 “투자”에 대한 **간주배분액**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A) 다음의 곱:

- (i) 해당 “투자”에 대한 한국의 자금 조달일 기준 간주이자율 및
- (ii) 해당 “투자”금액에서 아래 (B)호에 따른 해당 “투자”에 대한 이전 분배액을 차감한 금액(단, 어떠한 경우에도 0보다 적을 수 없음)에 이자 이월 금액을 더한 금액;

(B) 해당 “투자”금액을 (x) 한국과 협의하여 미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 해당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예상 존속 기간(년 단위로 표시)과 (y) 20 중 작은 수치로 나눈 값; 및

(C) 여하한 이월 금액.

어느 “투자”에 대한 **간주이자율**이란, 기준 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자 이월 금액이란, 특정 기간에 대해, 분배금 지급 시점에 해당 “투자”의 분배 가능 현금흐름이 간주배분액 정의의 (A)호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의미한다.

“투자”금액이란, 어느 “투자”에 관하여, 해당 “투자”에 대해 한국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투자” SPV(특수목적법인)란, 모든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설립된 엄브렐라(Umbrella, 우산형) SPV를 의미한다.

프로젝트 SPV란, 어느 “투자”에 관하여, 미국이 전부 소유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소유 및 분배금을 지급하는 목적을 위해 설립된 별도의 SPV를 의미한다.

어느 “투자”에 대한 수정배분액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A) 해당 “투자”금액을 (x) 한국과 협의하여 미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결정한 해당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예상 존속 기간(년 단위로 표시)과 (y) 20 중 더 작은 수치로 나눈 값; 및

(B) 상환원금 이월 금액.

스프레드(Spread, 가산금리)란, 각 “투자”에 대해, 해당 “투자”의 자금 조달 비용 및 위험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미국과 한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합의한 베이스 포인트(basis point) 수를 의미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스프레드는 본 양해각서 체결일 이전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에 체결된 유사한 양해각서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에 따른 스프레드에 30 베이스 포인트를 더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촉진관)란 미국 상무부의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를 의미한다.